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1996. 12.

전 성 훈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요약

KEDO는 미·소 양극체제하에서 접근이 통제되었던 북한 문제에 주요 서방국들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남북관계가 냉각된 현 시점에서 KEDO는 한국의 중요한 대북한 접촉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KEDO를 통한 대북 경수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DO가 갖는 이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KEDO를 탄생시킨 북·미 기본합의문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1980년대 이후 국제정치학에서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틀로 발전되고 있는 협력이론(cooperation theory)을 소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북·미 기본합의문 체제하에서 남북한간의 협력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협력이론(Cooperation Theory)

국제정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중앙의 통제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체제(anarchic international system)하에서 국가관계가 설정되고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국가간에 협력을 모색하는 문제가 1980년대 이후 정치·외교·안보·경제적 제 측면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협력이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업적을 달성하였다. 첫째, 협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

다. 둘째,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협력이 가능한 조건에 대한 주요 가설을 도출하였다. 국제관계에서 협력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상대방의 이익추구 노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국이 조화롭게 그들의 정책을 조율할 때 발생한다.

협력전략은 특정 상황에서 공동이익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해당상황에 내재해 있는 협력의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피해가면서 협력에 우호적인 조건과 요인들을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개발된 전략들이다. 상호주의의 요체는 조건성(contingency)과 동등성(equivalence)이다.

「상응」(Tit-for-Tat: TFT) 전략은 구체적인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따르는 전략으로서 악셀로드(Robert Axelrod)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TFT는 상대방의 비협력적 조치 한번(a Tat)에 대응하여 한번의 비협력적 조치(a Tit)를 취한다는 뜻이다. 악셀로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앙의 통제나 중재가 존재하지 않는 PD(죄수의 딜레마) 게임상황하에서 「미래의 그늘」이 확보된 경우 TFT 전략은 다른 대안들보다 효과적으로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뿐아니라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TFT 전략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관계의 행위자들이 특정 분야에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경우, 제한된 기간동안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TFT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협력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긴장완화를 위한 점증상호주의」(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GRIT) 전략은 실험심리학자인 오스굿(Charles Osgood)이 약 40여년전에 개발하였다. GRIT 전략도 TFT 전략과 같이 구체적인 상호주의에 기초한 협력전략이지만, 이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함으로써 TFT 전략의 일부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였다. GRIT 전략은 특히 적대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심화된 행위자들간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긴장을 점차적으로 완화하면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다. GRIT 전략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에 대해 상대방이 갖는 이미지와 관념을 변화시켜서 협력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상호간의 신뢰를 조성하는 데 있다. GRIT 전략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케네디 행정부는 쿠바미사일 위기사 GRIT 전략의 주요 원칙들을 활용한 바 있다. 둘째, 소련이 스탈린 사후 GRIT 전략에 기초한 대서방 협력조치를 취하여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를 규정한 조약의 체결을 촉진하였다.

「연계」(Cross-Issue Linkage) 전략은 여러가지 현안과 관심사항들을 서로 연관지어 타협안을 찾고 협력을 촉진하려는 구체적 목적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추진되는 전략이다. 연계전략은 다른 협력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왔다. 연계전략은 크게 세부 현안들을 연계하는 경우와 세부 현안과 관련 당사자들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연계하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향상된 조건부제한」(Enhanced Contingent Restraint: ECR) 전략은 웨버(Steve Weber)가 미·소간의 전략무기통제협상을 PD 상황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소련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일련의 전략을 면밀히 추적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의해 야기된 「상호확실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개념에 기초하여 억지력이 유지되는 PD 상황에서 상호협력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ECR 전략이 개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네 가지 전략이 모두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이중에서 ECR 전략이 가장 발전되고 정교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ECR 전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양보나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대응하는 시한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부여한다. 또한 상대방의 비협력적 행동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위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쟁을 유발하거나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준이 아닌) 정도의 대응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경쟁관계의 행위자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조성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ECR 전략은 소련과의 「탄도미사일요격체제」(Anti-Ballistic Missile: ABM)를 규제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행정부에 의해 적절히 구사되었다.

2. KEDO 체제 분석

1980년대 들어 레짐개념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레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다. 즉, 국제관계의 특정분야에서 참여자들의 기대가 수렴하는 묵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principles), 규범(norms), 규정(rules) 및 의사결정절차(decision making procedures)의 집합. 레짐의 형성은 레짐 참여자들의 개별 행동으로는 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결과(pareto optimal outcome)를 도출할 수 없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참여자들이 레짐형성에 대한 공동이익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선호도를 가져야 레짐이 형성될 수 있다.

제네바 기본합의문과 후속협정들을 토대로 한 일련의 합의사항들은 북한 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창설된 레짐으로 간주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레짐은 기본조약인 기본합의문의 명칭을 빌려서 “기본합의문 체제”(Agreed Framework regime) 혹은 구체적인 실행기구인 KEDO의 명칭을 이용하여 “KEDO 체제”(KEDO regime)라고 명명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과 사안들은 레짐의 개념을 이용하여 KEDO 체제의 원칙·규범·규정·기구로 체계화된다.

KEDO 체제는 레짐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남북한과 미국, 일본 등 KEDO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간 접촉의 내용을 변화시킴으로써 상호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둘째, KEDO 참여자들간에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셋째, KEDO 참여자들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의 양과 질을 증대시킴으로써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분명한 원칙과 적절한 규범을 갖추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구비함으로써 KEDO의 사업이 참여국들의 전반적인 관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KEDO와 북한은 1995년 9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의 고위급협상과 전문가협상을 개최하여 마침내 12월 15일 공급협정에 서명하였다. 공급협정은 경수로사업의 기본틀로서 18개조와 4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데, 11개의 부속의정서가 별도로 체결되어야 한다. 공급협정 체결 이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경수로사업은 1996년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잠수함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국과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경수로사업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7년 상반기에 가서야 경수로사업의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수로사업 추진상의 예상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연계전략의 산물인 기본합의문 체제에 내재해 있는 전략적 차원의 문제점이다. 둘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문제점들이다. 기본합의문이 “씨줄과 날줄”식으로 짜여진 고도의 연계전략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어느 일방이 기본

합의문상의 특정 부분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다른 부분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기본합의문의 전체적인 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KEDO 체제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들이 기본합의문 이행과 연계될 수도 있는 데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경수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정도의 주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 방안

행위자들간에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행위자들이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한다. 둘째, 행위자들이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성향을 지녀야 한다. 남북대화가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적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는 협력증진을 위한 두 가지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양측이 사안별로 공동이익의 존재를 인식할 경우 협력전략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상호협력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협력에 우호적인 여건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협력의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다음사항들을 고려

해야 한다: ①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인식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반응을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이 선행된 후에 집행되어야 한다. ②한국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대북인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에 접근해야 한다. ③분단 반세기 동안 발생한 이질성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남북관계에서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⑤남북한 쌍방의 국내 정치적 문제와 동맹관계도 상호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협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①복잡한 현안을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안보딜레마를 극복하겠다는 남북한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③협상타결의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④남북한이 상호경쟁에 의한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야 협력이 가능하다. ⑤남북한 양측 지도자의 리더십이 상호협력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남북관계를 PD 상황으로 전제하는 것은 양측간에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한이 협력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FT 전략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은 TFT 전략이 남북

관계에서 협력전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에 오랜기간에 걸쳐 불신과 긴장이 심화된 남북관계에서 GRIT 전략은 남북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93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GRIT 전략의 사용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GRIT 전략은 한국의 대북 전략이 상호협력 지향적임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GRIT 전략은 미국이 추진중인 대북 연착륙정책과 일맥 상통함으로써 한·미간의 정책조율과 공조에도 공헌할 것이다.

남북한이 지금까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유화조치를 취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때 대부분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측의 남북 대화 전략이 사실상 연계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계전략은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네 가지의 협력전략중에서 양측의 당국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전략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구사한 연계전략은 협력을 유도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한간에 협력이 도출될 수 있는 관계의 미성숙,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인식 부재, 연계전략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의 미비, 연계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기 선택의 문제점, 연계전략에 사용되는 대상 선택의 문제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리획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무리한 연계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기본합의문의 서명자가 아닌 한국이 KEDO 체제내에서 연계전략을 구사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은 KEDO 체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DO 체제와 연관이 없는 문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수로사업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는 KEDO 체제내에서 한국의 입지와 협상력을 높혀 주는 소중한 자원이다.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KEDO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DO 내부의 문제를 이용하는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KEDO 체제하에서 체제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사안과 연계함과 동시에 체제외부의 문제를 내부의 사안과 연계하는 양면적 연계전략(two-way strategy to cross-issue linkage)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CR 전략도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협력 전략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ECR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행위와 한국의 대응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의 비협력적 조치에 대응하되 남북한 협력의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가 국내의 대북한 강경입장도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다. 넷째, 북한에 대해 모순된 신호

를 보냄으로써 불신과 의혹만 가중시키지 않도록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경수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세부대책도 제시하였다. 세부대책에서는 문제의 성격상 일정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GRIT 전략이나 ECR 전략과 달리 연계전략의 개념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아울러 세부대책에서 연계의 대상은 남북한간의 현안보다는 한·미 및 한·일간의 관련 사안들에 중점을 두었다.

- 目 次 -

용어풀이	ii
제 I 장 서론	1
제 II 장 협력이론(Cooperation Theory)	5
1. 이론적 검토	5
2. 협력전략 및 사례	18
제 III 장 KEDO 체제 분석	62
1. 레짐이론적 분석	62
2. 이행현황과 향후일정	74
3. 사업추진상의 예상문제점	79
제 IV 장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 방안	96
1. 기본요건	96
2. 전략적 차원의 대책	112
3. 사안별 세부대책	124
제 V 장 결 론	133
참고문헌	137

- 용어 풀이 -

- ABM: Anti-Ballistic Missile (탄도미사일요격체제)
- AGM: Absolute Gain Maximizer (절대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
- CR: Contingent Restraint (조건부제한 전략)
- 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회의)
- CTE: Contingent Threat of Escalation (조건부위협가중 전략)
- ECR: Enhanced Contingent Restraint (향상된 조건부제한 전략)
-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 GRIT: 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긴장완화를 위한 점증상호주의 전략)
-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MBFR: Mutual and Balance Force Reduction (유럽재래식군사력 감축협상)
- NPT: Non-Proliferation Treaty (핵무기비확산조약)
- PD: Prisoner's Dilemma (죄수의 딜레마 게임)
- RGM: Relative Gain Maximizer (상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

ROM: Rough Order of Magnitude (경수로발전소 개략사업비)

TFT: Tit-for-Tat: (상응전략)

TSC: Technical Support Consultant (기술자문사)

제 I 장 서 론

1990년대 전반기의 남북관계를 지배했던 북한 핵문제는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간에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이 체결됨으로써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는 북한에 대해 2,000MWe 규모의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기본합의문에 의거하여 경수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KEDO와 북한은 한국표준형 경수로의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1995년 12월 15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공급협정에 의거하여 후속의정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1996년 5월 22일 「KEDO의 법적 지위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가, 1996년 6월 14일 「통행의정서」와 「통신의정서」가 합의되어 1996년 7월 11일 정식서명과 함께 발효되었다. KEDO와 북한은 또한 1996년 9월 「부지인수의정서」와 「북한이 제공하는 유류서비스에 관한 의정서」의 문안에 합의하고 정식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은 한국표준형경수로의 채택과 경수로사업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경수로사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한국배제 전략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KEDO 참여국들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경수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북한과 미국은 기본합의문 체제하에서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나 남북대화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 한국은 미·일에 대해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양국이 대북 접근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한·미, 한·일간에 대북 접근의 정도와 속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다는 징후가 여러 경로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이는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한국 정부를 난처한 입장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다.

KEDO는 그 동안 미·소의 양극체제하에서 접근이 통제되었던 북한 문제에 주요 서방국들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KEDO는 주요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인 것이다. 따라서 KEDO 참가국들은 KEDO를 이용하여 대북한 접근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KEDO 참가국들과 한국간에 정치·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역시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이다.

반면에 남북관계가 냉각된 현 시점에서 KEDO는 한국의 중요한 대북한 접촉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관계자들도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에서 KEDO가 갖는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KEDO를 통한 대북 경수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DO가 갖는 이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KEDO를 탄생시킨 북·미 기본합의문 체제하에서¹⁾ 남북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협력 문제를 논하면서 과연 협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1980년대 이후 국제정치학에서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틀로 발전되고 있는 협력이론(cooperation theory)을 소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북·미 기본합의문 체제하에서 남북한간의 협력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협력이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네 가지의 협력전략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간에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은 「상응」(Tit-for-Tat: TFT) 전략, 「긴장완화를 위한 점증상호주의」(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GRIT) 전략, 「연계」(Cross-Issue Linkage) 전략, 「향상된 조건부제한」(Enhanced Contingent Restraint: ECR) 전략 등이다. 제Ⅲ장에서는 KEDO 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KEDO 체제를 레짐이론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본합의문의 이행현황과 향후일정 및 사업추진상의 예상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Ⅳ

1) 본 연구에서는 레짐이론에 의거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합의.이행중인 제네바 기본합의문과 후속 협정들을 포함한 일련의 합의사항들을 망라하여 “기본합의문 체제” 혹은 “KEDO 체제”라고 명명하였다.

장에서는 협력전략에 대한 연구와 KEDO 체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요건, 전략적 차원의 대책 그리고 예상문제점에 대한 세부대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 II 장 협력이론(Cooperation Theory)

본 장에서는 협력이론이 주장하는 바를 간략히 검토하고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개발된 네 가지의 전략과 이들 전략이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이론적 검토

국제정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중앙의 통제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체제(anarchic international system)하에서 국가관계가 설정되고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국가간에 협력을 모색하는 문제가 1980년대 이후 정치·외교·안보·경제적 제 측면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¹⁾ 특히 1970년대 초부터 경제, 안보

1) C. Glaser, "Realists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1994/95), pp. 50~90; J. Morrow, "Modeling the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istribution versus inform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94), pp. 387~423;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A. Stein, *Why Nations Cooperate: Circumstance and Cho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M. Taylor,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K.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R.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R.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C. Lips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October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제적 분위기가 국가간 협력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간의 협력에 대한 연구가 “협력이론”(cooperation theory)으로 발전할 정도로 체계를 갖추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직 협력이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간에 어떠한 경우에, 왜, 그리고 어떻게, 협력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²⁾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협력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문적 성과를 포괄적으로 협력이론으로 지칭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협력이론과 일반적인 국제관계이론과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해보겠다. 국제관계를 무정부상태로 간주하고 국가이익에 의거한 독자적 행동을 중요시하는 현실주의(realism)에서 협력은 특이하고 일시적인 것이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자유주의(liberalism)에서 협력은 시장의 형성과 같이 이기주의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³⁾ 본 연구에서

1984), pp. 1~23.; S.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B. Russett, *The Prisoners of Insecurity*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1983); H. Wagner, “The theory of games and the proble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June 1983), pp. 330~346; R.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January 1978), pp. 167~214.

2)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 48.

3) A. Stein, *Why Nations Cooperate: Circumstance and Choice in International*

는 협력이론이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와 일부 공통점을 가지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두 가지 관점의 접점에 위치한다고 정의하였다.⁴⁾ 먼저 협력이론은 현실주의로부터 각국이 무정부상태의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위해 독자적인 행동에 의존한다는 상황 설정을 수용하였고 자유주의로부터는 국가간에 의미있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반면에 협력이론은 현실주의가 국가간의 협력 자체를 경시한 문제점을 극복하였고 협력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무시한 자유주의의 단점도 보완하였다.

협력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은 국가관계에서의 체제적 요인(systemic factors)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간의 협력행위의 동기와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⁵⁾ 이들 문헌의 상당수가 게임이론(game theory)을 분석의 중심틀로 사용하고 특히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PD) 게임⁶⁾을 국제정치 현실에 가장 접근한 모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국가간의 협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력이론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업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⁷⁾ 첫째, 협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체적인 합

Relations, pp. 7, 25.

4) 참고로 웨버(Steve Weber)는 협력이론이 현실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 9.

5) H.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 *World Politics* (April 1992), p. 467.

6) PD 게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의 제IV장 1절 참조.

7) *Ibid.*, pp. 467~480.

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행위자(player or actor)의 협력적인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주로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몇 가지 주요 가설을 도출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협력은 “행위자들이 정책조정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상대방의 실제 혹은 예측된 선호도에 맞출 때 발생한다”⁸⁾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정책조정이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관계에 놓여있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줄이도록 자신의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제관계에서 협력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상대방의 이익추구 노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국이 조화롭게 그들의 정책을 조율할 때 발생한다.”⁹⁾

이러한 협력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¹⁰⁾ 첫째, 행위자들의 이성적인 행위는 특정한 목적

8) 영어원문은, “[cooperation] occurs when actors adjust their behavior to the actual or anticipated preferences of others, through a process of policy coordination.” C. Lindblom,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1965), p. 227. Ibid., p. 467에서 재인용.

9) 영어원문은, “Cooperation occu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en states adjust their policies in a coordinated way, such that each state’s efforts to pursue its interests facilitate rather than hinder the efforts of other states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 6.

10) H.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을 위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모든 행위자가 같은 목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둘째, 협력을 통해 행위자들은 일정한 이득이나 보상을 받게 된다. 이득은 그 규모나 성질에 있어서 모든 행위자에게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협력을 통해 모두가 상호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협력의 동기는 단순히 상대방을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키겠다는 기대에 근거하여 상대방과 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은 모든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 정책을 조정하는 목표지향적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¹¹⁾ 협력에 대한 이와같은 정의는 대다수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협력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¹²⁾ 첫째, 행위자들간에 의사소통이나 협정의 체결없이 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 (*tacit cooperation*). 주로 반복된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악셀로드(Robert Axelrod)가 제의한 Tit-for-Tat(TFT) 전략에 의한 협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TFT 전략은 행위자들간의 접촉이 반복되는 PD 게임상황

and weakness,” pp. 467~468.

- 11) 이러한 측면에서, 협력은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줄이거나 상대방이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때 발생하는 경쟁(competition) 또는 갈등(conflict)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한편 군비통제 차원에서 협력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정책조정을, 경쟁은 군비증강이나 동맹형성을 의미한다. C. Glaser, “Realists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p. 51.
- 12) H.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 p. 469.

에서 특정한 협의나 협정이 필요없이 행위자들의 개별적 행위가 협력으로 수렴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둘째, 협상을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negotiated cooperation*).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협력의 경우이다. 협상의 결과가 조문화되고 이에 따라 행위자들의 협력행위가 이루어진다.

셋째, 협력이 강요되는 경우이다(*imposed cooperation*). 주로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관계에서 강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자의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자신의 정책도 조정하는 경우 강요된 협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강자와 약자간의 힘의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수록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차이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협력이론 연구의 두번째 주요 업적은 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여섯 가지의 가설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설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 협력이론으로 발전할 만큼 완성된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의 명제는 아니며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실제상황에 대한 응용력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협력이론의 가설들은 협력이 발생하는 여건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협력에 대한 공통된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각 가설에 대해 해당 가설이 주장하는 바와 가설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하겠다.¹³⁾

가. 절대이익 추구하고 상호주의 가설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즉 행위자는 상대방과 자신과의 이익차이인 상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relative gain maximizer: RGM)이 아니라 자신이 얻는 이익인 절대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한다(absolute gain maximizer: AGM). 그런데 중앙의 통제가 없는 무정부상태 그리고 PD 게임으로 묘사되는 협력과 개별이익 추구사이의 갈등 구조속에서 절대이익의 최대화는 상호주의(reciprocity)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비협력적 행위에 대한 제재능력이 결여된 무정부체제하에서 절대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상호주의의 대표전략인 Tit-for-Tat(TFT) 전략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상호주의는 위반시에 제재를, 협력시에는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틀이기 때문에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전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게임이 반복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비협력적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행위자들이 항상 절대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간에는 상대적인 이익의 확보를 절대이익의 추구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행위자의 성향(AGM 혹은 RGM)은 행위자들간의 관계가 갈등 혹은 협력으로 귀결되도록 만

13) Ibid., pp. 470~480.

드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이익 최대화에 대한 행위자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경쟁과 갈등이 조성되면서 협력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¹⁴⁾

행위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RGM 성향의 행위자를 상대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관계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자가 그 관계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쪽은 RGM이 아니라 RGM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쪽이다. RGM에 대해 이러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위협도 영향력 확대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¹⁵⁾ 물론 RGM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RGM이 축적된 이익을 바탕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결국 행위자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획득하는 상대이익을 증감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14) D. Snidal, "Relative gains 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September 1991).

15) H.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 p. 487.

나. 행위자 수의 가설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협력의 가능성은 적어진다는 것이 두번째 가설이다. 행위자의 수가 많을수록 합의 사항의 위반가능성이 커지는 대신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행위자 수의 증가는 심각한 집단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야기하게 된다.

행위자 수의 가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점에 직면한다. 첫째, 행위자 수의 가설은 위반시의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의 수가 많을수록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현안이 증대되므로 상호 교환(exchanges)과 보상(side-payments)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모든 행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된 타협안이 마련될 확률이 높아진다. 즉 행위자 수의 증가는 곧 행위자들과 관련된 사안의 수가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협력의 기회가 많아지고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둘째, 행위자의 수는 구조적인 조건이 아니라 행위자들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즉 많은 수의 행위자들을 크기와 영향력이 비슷한 소그룹으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행위자들이 RGM 성향인 경우 행위자수가 증가할수록 협력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쟁적인 상황에서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존재할 경우 필요에 따라 보다 적대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연합

(coalition)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행위자들이 그대로 대치하는 것보다 협력을 유도해낼 가능성이 커진다.¹⁶⁾ 즉 상대이익 추구에 따른 긴장이 다자간 협력을 통해 제한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¹⁷⁾

다. 게임의 반복과 「미래의 그늘」 가설

행위자들의 협력 여부는 그들이 장래에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믿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악셀로드가 제안한 「미래의 그늘」(the shadow of the future) 개념은 미래에 발생할 상대방과의 접촉에 대한 고려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즉 게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장래의 이익이 현재의 가치기준에서 볼 때 크게 뒤떨어지거나 혹은 감가상각되지 않는 경우 「미래의 그늘」이 길어지고 장래의 접촉이 중시됨으로써 협력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현재 협력행위를 유도해내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복회수와 감가상각률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결과(예: 무한대의 반복회수)는 축적되어 있다.¹⁹⁾ 하지만 반복회수와 감가상각률은 행위자의 수 및

16) D. Snidal, "Relative gains 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 716.

17) 이상의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올슨(Mancur Olson)의 견해와 배치된다. 민족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와의 의견교환, 1996년 12월 5일. 올슨의 대표적 저서로는 M.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참조.

18) R.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p. 59; pp. 126~132.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인식과 기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라. 국제레짐 가설

네번째 가설은 국가간에 레짐(regime)을 형성함으로써 협력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레짐은 특정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무정부상태가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레짐이 규정하는 건설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레짐은 또한 행위자들이 상대방의 행위(특히 합의사항 위반 가능성)에 대한 인지능력을 제고하는 수단이다. 즉 레짐은 상황의 불확실성과 상대방의 비협력적 행동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행위자가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통해 협력을 유도하는 레짐의 역할은 레짐비판논자들에 의해서도 수용되고 있다.

하나의 레짐에 다양한 현안들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레짐참여자들간에 협력이론의 기본 개념인 이익의 균등 배분에 기초하여 현안들을 연계하거나 별도의 보상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레짐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간에는 해당 레짐과 관련없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19)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pp. 9~76.

것도 용이하다. 즉 특정 분야의 레짐은 레짐참여자들이 해당 분야의 사안들과 다른 분야의 사안들을 상호 연계하거나 별도의 보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행위자들간의 전반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레짐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마. 지식인 집단 가설

지식인 집단(epistemic communities)이 국가간 협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식인 집단은 “같은 인과관계를 믿고 공동의 가치를 갖는 전문가그룹으로서 그 회원들은 특정 문제와 그 해답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갖는다.”²⁰⁾ 레짐과 지식인 집단은 정보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하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은 다르다. 레짐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갖는 선호도와 상대방의 합의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지식인 집단은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expert information)를 제공하여 행위자들의 기대치를 조율함으로써 타협안을 제공하고 합의를 촉진한다.

20) 영어원문은, “a professional group that believes in the sam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truth tests to accept them, and share common values; its members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of a problem and its solution.” P. Haas, *Saving the Mediterrane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 55.

바. 힘의 불균형 가설

여섯번째 가설은 행위자간 힘의 불균형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의 협력은 앞서 소개한 세 가지의 가능한 협력 가운데 강요된 협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여섯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발전한 협력이론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가설이 갖는 단점외에도 국내정치적 요인을 소홀히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무정부상태라는 전제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중앙통제 역할이 존재함)를 구분하였고 협력이론의 분석틀인 게임이론이 행위자를 하나의 이성적 인격체로 단순화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국제협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국내정치적 요인이 필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²¹⁾ 첫째, 국내정치는 한 국가(행위자)의 국가 이익이 설정되고 선호도가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국가가 선택하는 전략은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 부처이기주의, 특정 집단의 이해 및 국민여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국가간의 조약은 국내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이행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조약의 협상은 비준가능성, 즉 국내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

행위자를 하나의 이성적인 인격체로 간주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현안에

21) H.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 p. 493.

대한 협상을 최소한 두 개의 차원(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복합적 과정으로 분석하고 합의가능성을 진단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²²⁾ 국회의원이 의회활동과 지역구활동이라는 두 개의 게임에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분석하는 문제(interconnected games)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²³⁾ 프랑스 선거를 두 개의 동맹이 경쟁하는 상황하에서 각 동맹내에서 소속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경쟁하는 게임(nested game)으로 간주하고 진행된 연구도 있다.²⁴⁾

2. 협력전략 및 사례

특정사안에 대한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상호이익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22) 김태현·유석진·정진영 (편) 「외교와 정치: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논리와 전략」 (서울: 도서출판 으뜸, 1995); S. Cheon and N. Fraser, "A multi-level game approach to labor-management negotiations," *Information and Decision Technologies*, vol. 16, no. 3 (1990), pp. 277~289; R.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pp. 427~460.

23) A. Denzau, W. Riker and K. Shepsle, "Farquharson and Fenno: sophisticated voting and home styl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85), pp. 1117~1134.

24) G. Tsebelis, "Nested games: the cohesion of French coali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8 (1988), pp. 145~170.

서는 상대방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전략은 특정 상황에서 공동이익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해당상황에 내재해 있는 협력의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피해가면서 협력에 우호적인 조건과 요인들을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⁵⁾

조지(Alexander George)는 전략을 크게 협상전략(bargaining strategy)과 상호전략(strategy of reciprocity)으로 구분하였다.²⁶⁾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들은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서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해낸다. 연계(cross-issue linkage) 전략이 대표적인 협상전략에 속한다. 반면에 상호전략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유화적인 행동을 유도해내려는 기대속에 일방적으로 구사하는 전략으로서 상호협력을 위한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FT 전략과 GRIT(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전략이 상호전략의 범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조지가 밝혔듯이, 실제상황에서 협상전략과 상호전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TFT 전략과 GRIT 전략도 협상전략으로 활용되어 구체적인 조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연계전략을 통해서도 상호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호전략이 초기에는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지만 이를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구체적인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5) A.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in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692.

26) *Ibid.*, 693.

본 절에서는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네 가지의 전략을 소개하고 각 전략이 적용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TFT, GRIT, Cross-Issue Linkage와 함께 Enhanced Contingent Restraint(ECR)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ECR 전략은 웨버(Steve Weber)가 미·소간의 전략무기통제협상을 분석하면서 협상타결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체계화 한 것이다.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되어 첨가하였다. 본 절에서는 네 가지 전략들이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는 상호전략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부조약을 체결하는 협상전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²⁷⁾

대부분의 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개발된 전략들이다. 따라서 이들 전략을 분석하기에 앞서 상호주의에 대

27) 협력을 통해서만 공동의 이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호의존적 관계를 염두에 둔 행위자들의 독자적 행동도 공식적(formal) 혹은 묵시적(tacit)인 조약이나 합의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상호조정요소를 포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협력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독자적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상대방의 힘과 이익에 서로 적응하는 것(mutual adjustment)이다. 둘째, 관련국들이 안보를 약화시키는 요소를 서로 제거하는 상호주의적 조정(reciprocal coordination)이다. 셋째,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안보를 직접 증대시키거나 상대방의 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안보를 증대시키는 독자적인 행동(unilateral actions)이다.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 p. 12; A. George, "Incentives for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in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648.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지는 분석의 엄밀성을 위해 상호주의를 적용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²⁸⁾ ①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상호주의, ②상호조율과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과정으로서의 상호주의, ③상호이익이 교환되고 규범과 규칙이 형성되는 결과로서의 상호주의, ④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전략으로서의 상호주의. 본 연구에서는 첫번째, 즉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상호주의에 초점을 맞추겠다. 한편 웨버는 상호주의를 다음과 같이 세 차원으로 세분화하였다.²⁹⁾ ①국가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②합의사항이 갖는 바람직한 특성, ③전략적 원칙 혹은 행동지침. 본 연구에서는 협력을 촉진하는 전략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전략적 원칙이나 행동지침 차원의 상호주의를 논하고자 한다.

상호주의의 요체는 조건성(contingency)과 동등성(equivalence)이다.³⁰⁾ 조건성은 상호주의하에서의 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의 보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보상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행위는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협력에는 협력으로 위반에는 위반으로 대응한다는 뜻이다. 동등성은 상호주의에 의거한 행위의 결과 행위자들에 대한 이익배분이 균형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게임의 상황, 행위자들의 힘의

28) A.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p. 710, 각주 15.

29)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 30, 각주 12.

30) R.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1 (Winter 1986), pp. 5~7.

우위 등에 따라 이익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모든 행위자가 상호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적절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의 두 가지 개념을 기초로 코헨(Robert Keohane)은 상호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상호주의는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이전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를 하여 거의 동등한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다.³¹⁾

코헨은 상호주의를 구체적인 것(*specific reciprocity*)과 포괄적인 것(*diffuse reciprocity*)으로 구분하였다.³²⁾ 구체적인 상호주의하에서는 특정 행위자들이 특정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된 동등한 가치를 교환하며 행위자들의 권한과 임무가 분명하게 규정된다.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상호주의가 바로 구체적인 상호주의에 해당되며 악셀로드의 TFT 전략이 구체적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개발된 협력전략이다. 구체적인 상호주의는 확인가능한 상대방들로부터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상대방의 비협력적 조치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비협

31) 영어원문은, "Reciprocity refers to exchanges of roughly equivalent values in which the actions of each party are contingent on the prior actions of the others in such a way that good is returned for good, and bad for bad." Ibid., p. 8. 상호주의는 협력에 동참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거의 동등한 가치의 절대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상대이익의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H.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 pp. 471~472.

32) R.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 4; pp. 8~24.

력적 조치의 연쇄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미·소 간의 군비통제협상과 같이 상호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무감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구체적 상호주의가 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³³⁾

반면에 포괄적인 상호주의는 동등한 가치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행위자도 특정 인물이나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된다. 행위자들의 의무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행동양식 정도이다. 행위자는 포괄적인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특정한 상대방으로부터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해있는 집단이 전체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한다. 즉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행위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된다. 포괄적인 상호주의는 행위자가 개별적인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기 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상대방의 위반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즉 free-rid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행위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확산된 의무감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상호관계가 우호적이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가 일방적 양보로 귀결되어도 손실이 크지 않고 회복가능하며, 상대방이 RGM 성향이 아닌 경우, 포괄적인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좋은 상황이다.³⁴⁾

코헨은 조건부 최혜국(most-favored-nation: MFN) 대우를 구체적

33)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 32.

34) Ibid.

상호주의의 사례로, 무조건 최혜국 대우를 포괄적 상호주의의 예로 들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상호주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상호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보았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전략의 장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다.³⁵⁾ 첫째, 행위자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둘째, 행위자의 양보와 상대방의 대응 수준을 측정·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상호주의가 부정적으로 적용되어 비협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관계가 악화된다.

특히 불신이 심화된 관계에서는 상대국이 이러한 의무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악이용하려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따른 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하는 것은 상대국의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상대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⁶⁾

가. Tit-for-Tat

「상응」(Tit-for-Tat: TFT) 전략은 구체적인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따르는 전략으로서 악셀로드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TFT

35) Ibid., p. 30.

36) Ibid.

은 상대방의 비협력적 조치 한번(*a Tat*)에 대응하여 한번의 비협력적 조치(*a Tit*)를 취한다는 뜻이다. TFT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는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최초로 협력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 다음의 행동은 상대방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한다. 즉 처음 협력적 행동을 취한 행위자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비협력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 역시 비협력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가 다시 협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협력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악셀로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앙의 통제나 중재가 존재하지 않는 PD 게임상황하에서 「미래의 그늘」이³⁷⁾ 확보된 경우 TFT 전략은 다른 대안들보다 효과적으로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뿐아니라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³⁸⁾

악셀로드의 연구 결과는 PD 상황하에서 상호주의 개념에 입각

-
- 37) PD 상황하에서 행위자들간의 접촉이 지속될 확률이 크고 미래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에 비해 크게 감가상각되지 않음으로써 미래의 접촉이 중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38) R.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pp. 13~61. 악셀로드는 행위자간의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밀너(Helen Milner)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PD 게임의 전제는 2×2 게임상황을 어렵게 구성하여 보다 현실에 가깝게 만들려는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밀너는 행위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기만할 경우 PD 보다 더 나쁜 상황이 야기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동이익의 도출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H.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 pp. 481~482. 서로 의사도 명확히 전달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개발된 TFT 전략의 효용성은 행위자들간의 의사소통이 허용되는 우호적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행위자들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는다면 악셀로드의 연구결과는 의사소통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실험결과를 한 차원 발전시킨 성과를 거두었다.³⁹⁾ 또한 악셀로드는 협력의 당위성은 단기적인 이익 뿐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의 그늘」에 영향받는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즉 미래의 협상라운드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중요할수록 행위자들이 현재에 비협력적 행위를 하여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TFT 전략과 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은 PD와 같은 특정 게임상황 뿐 아니라 상호 협력이 상호경쟁보다 행위자 모두에게 더 낫은 이익을 주지만 합의사항 위반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모든 게임상황에서 효과적인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⁴⁰⁾

그러나 TFT 전략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는 TFT 전략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⁴¹⁾

첫째, TFT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의 최초 협력적 행위가 상대방에 의해 잘못 인식될 수 있다. 즉 상대방은 협력적 행위의 이

39) R.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 9.

40) Ibid. 물론 악셀로드의 연구결과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행위자들이 협력을 해야한다(*must*)고 주장하거나 협력을 할 것이라고(*will*)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협력을 할 수 있다고(*can*) 예시할 뿐이다.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 275.

41) A.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pp. 704~705; D. Larson, "The psychology of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gotiation Journal* (July 1988), pp. 289~292; D. Larson,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nter 1987), pp. 30~31; R.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p. 10~11.

면에 보다 적대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행위자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협력적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TFT 전략은 상대방의 반응이 비협력적일 경우 최초로 협력적 조치를 취했던 행위자 역시 비협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비협력적인 행위의 연쇄반응(*feud or echo effects*)을 일으킬 수 있다. 악셀로드⁴²는 이러한 연쇄반응을 막기 위해 행위자가 상대방의 비협력적 행위(*a Tat*)에 대해 90%만 비협력적으로 대응(*nine-tenths of a Tit*)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⁴²⁾

셋째, 긴장과 적대의식이 고조되어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상대방의 협력적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번의 협력적 행위로는 부족하며 여러번의 협력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즉 TFT 전략에서와 같은 1:1식의 대응으로는 적대관계에서 상호 협력적 행위의 유도를 보장할 수 없다.

넷째, 정책결정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기존 이미지와 믿음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평가한다. 상대방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행위자는 상대방의 협력적 행위를 무시하거나 음모나 술수로 평가절하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다섯째, TFT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게임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예를 들어 PD 게임

42) R.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p. 138.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가간의 관계가 반드시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갈등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FT 전략 자체가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여섯째, 행위자들이 상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RGM 성향을 갖는 경우, 상호협력을 기대할 수 없으며 TFT 전략의 사용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RGM 성향의 행위자들은 상대방의 선의의 행위를 오히려 악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TFT 전략의 협력적 선제조치가 이용당할 뿐이며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TFT 전략을 구사한 행위자 역시 자기방어적으로 됨으로써 비협력적 대응을 하고 갈등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일곱째, 국내정치적 요인들이 상대방의 협력적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자 하는 행위자(국가)의 능력과 의지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여덟째,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와 상대방의 행위를 이중잣대(double standards)로 평가하는 경우 협력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행위는 국가안보나 동맹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의 유사한 행위는 국제평화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경우이다. 같은 기능의 무기체계도 자신이 보유하면 방어무기이지만 상대방이 보유하면 공격무기로 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아홉째, 행위자들이 동등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편견을 갖는 경우 협력이 도출될 수 없다. 즉 행위자들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거래를 하더라도 이익이 균형되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동등성이라는 명목하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주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남용함으로써 분쟁이 야기될 것이다. 동등성에 대한 판단이 왜곡되는 상황에서는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상호주의에 의거한 협력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행위자가 실시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상대방이 양보를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협상의 칩(bargaining chip)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상호주의에 의거한 협상에 대비하여 카드를 축적하는 것이 행위자의 불이익을 수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각국이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세율 인하 요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TFT 전략은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고 「미래의 그늘」이 확보된 상황에서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우수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국가간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는 게임이론가들이 컴퓨터 토너먼트를 통해 전략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채택한 전략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⁴³⁾ 또한 국제관계에서 한 분야에 대해 철저한 1:1식의 대응을 상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게임이론에서 유용한 전략으로 개발된 TFT 전략이 현실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국제관계에서는 오히려 상호주의에 입각하되 그 형태가 다양한 전략들이 구사될 수 있다.⁴⁴⁾ TFT 전략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협력을 도출한 역사적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TFT 전략의 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적대관계의 행위자들이 특정 분야에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경우, 제한된 기간동안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TFT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유사한 반응을 유도하여 해당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TFT 전략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전략에 내포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전략을 효율적으로 또한 융통성 있게 구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나. GRIT

「긴장완화를 위한 점증상호주의」(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GRIT) 전략은 실험심리학자인 오스굿(Charles Osgood)이 약 40여년전에 개발했지만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43)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 37.

44) *Ibid.*, p. 5.

45) 예를 들어 웨버는 악셀로드가 컴퓨터 토너먼트를 통해 개발한 TFT 전략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하였지만 결과는 그 다지 성공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Ibid.*, pp. 38~40.

못한 전략이다.⁴⁶⁾ GRIT 전략도 TFT 전략과 같이 구체적인 상호주의에 기초한 협력전략이지만, 이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함으로써 TFT 전략의 일부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였다. TFT 전략은 상대방의 믿음에 변화를 야기하거나 상호신뢰를 증진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협력을 달성하는 행동변화이론(behavior modification theory)이다. 반면에 GRIT 전략은 상호신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식이론(cognitive theory)이다.⁴⁷⁾

GRIT 전략은 특히 적대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심화된 행위자들 간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긴장을 점차적으로 완화하면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다. GRIT 전략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에 대해 상대방이 갖는 이미지와 관념을 변화시켜서 협력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상호간의 신뢰를 조성하는 데 있다.⁴⁸⁾ 이를 위해 행위자는 상대방에 대한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에게 “적절한 위험”(moderate risk)이 수반되는 협력적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해나간다. GRIT 전략의 핵심요소를 다음과 같이 아홉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⁴⁹⁾

46) C. Osgood, “Suggestions for winning the real war with communis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December 1959), pp. 295~325; C. Osgood,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47) D. Larson,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p. 57.

48) *Ibid.*, pp. 31~32.

49) A.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p. 706.

첫째, GRIT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는 불신을 없애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해 일련의 협력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둘째, 협력조치는 상대방의 호응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셋째, 개별 협력조치의 시행을 발표할 때, 행위자는 상대방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유하되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이러한 협력조치는 상대방의 호응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지속된다.

다섯째, 협력조치는 행위자의 선의에 기초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일방적인 협력조치는 상대방이 오히려 비협력적 행동을 취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정도이어서는 않된다.

일곱째, 상대방이 GRIT 전략을 악이용하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행위자는 즉시 그리고 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대응을 해야 한다.

여덟째, 상대방이 GRIT 전략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보다 강도높은 협력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의 조치에 대해 보상한다.

아홉째, GRIT 전략은 서로 다른 분야와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TFT 전략과 같이 GRIT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도 최초로 협력

적 조치를 취하며 상대방의 비협력적 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복을 한다. 또한 상대방이 협력적 자세로 복귀할 경우 행위자는 과거를 문제삼지 않고(*forgiving*) 긍정적으로 보답한다.

반면에 GRIT 전략은 TFT 전략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다르다. 50) 첫째, 상대방이 즉각 반응하리라고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일방적인 양보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해나간다. 둘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이는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대방이 반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협력조치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와 지역으로 확대한다. 협력조치의 다양화는 GRIT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가 특정 부분에서 크게 손해를 보거나 이용당할 가능성을 줄인다. 또한 행위자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넷째, GRIT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는 어느 정도의 위험(*risk*)과 손실(*cost*)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진실성이 입증되고 상대방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

GRIT 전략이 갖는 이상의 특징을 감안할 때, GRIT 전략이 너무 이상적이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GRIT 전략이 실제로 적용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케네디 행정부의 관리는 쿠바미사일 위기시 GRIT 전략의 주요 원칙들이 이용되었다는 점을 오스굿에게 알려주었다.⁵¹⁾ 오스트리아

50) D. Larson,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pp. 32~33.

51) A.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p. 706.

의 중립화를 규정하는 조약의 협상시에도 소련은 스탈린 사후 GRIT 전략에 기초하여 다양한 대서방 협력조치를 취하였다.

오스트리아 조약 체결과정에서 소련이 구사한 GRIT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²⁾ 소련은 말렌코프(Georgi Malenkov) 수상이 1953년 3월 15일 미·소간에 상호이해에 기초해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GRIT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3월 27일 소련은 함부르크 상공에서 영국항공기를 실수로 추락시킨 사건(3월 12일 발생)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항공안전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다. 3월 28일 중국과 북한은 소련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전쟁의 포로중 부상자와 환자를 교환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수용하였다. 3월 30일 중국은 한국전쟁의 포로를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3월 31일 소련은 유엔 사무총장에 Dag Hammarskjold를 임명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4월 8일 소련의 관리들은 유엔 군축회의 석상에서 서방측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였다.

소련이 취한 일련의 화해조치에 대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4월 16일 「평화의 기회」(Chance for Peace)라는 연설로 대응하였다. 이 연설에서 아이젠하워는 말이 행동에 의해 뒷받침될 때 평화를 열망하는 소련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소련의 오스트리아 조약 서명이나 2차대전의 포로 석방 등과 같이 몇 가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소련의

52) D. Larson,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pp. 34~52.

진실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평화를 향한 일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소련이 취한 일련의 화해조치가 갖는 문제점은 별다른 희생이나 위험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소련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가 스탈린의 호전적 자세를 포기하고 국제규범에 순응하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미진한 조치였다는 것이 라슨(Deborah Larson)의 평가이다.⁵³⁾

4월 25일 소련은 아이젠하워의 연설내용 전문을 프라우다(Pravda)지와 이즈베스티야(Izvestia)지에 게재하였다. 이는 스탈린 치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였다. 소련은 4월 27일 소련에 억류된 오스트리아인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사면할 것을 제의하였다. 5월 30일 터키에서의 영토권과 군기지 사용권 주장을 철회하였고, 6월 8일 오스트리아의 동·서 지역간에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서 여행자에 대한 검색도 완화하였다. 6월 10일 소련은 징발했던 정부청사, 학교, 토지와 주택을 반환하였다. 7월 27일 한국전쟁을 중지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7월 30일 소련은 오스트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데 대한 보상을 약속하였고 8월 11일 자국이 책임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언론검열을 철폐하였다.⁵⁴⁾

53) Ibid., p. 39.

54) 소련의 GRIT 전략은 동독에서의 소요와 크레믈린내의 말렌코프와 후르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의 기회」 연설을 제외하고 별다른 협력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길 거부하자 소련은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소련 외상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는 1954년 1월 25일 개최된 베를린 외상회의에서 독일의 무장해제와 중립화를 위해 오스트리아 조약을 볼모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독일의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외국군대가 독일에 주둔한다는 조건으로 오스트리아 조약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54년 10월 서독의 NATO 편입을 승인한 파리조약 의정서가 체결되자 소련은 12월 파리조약의 비준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몰로토프가 1955년 2월 8일 독일문제와 오스트리아 조약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소련의 GRIT 전략은 재개되었다. 소련이 GRIT 전략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클렘린의 권력투쟁이 국방장관 불가닌(Nikolai Bulganin)의 지지를 얻은 후루시초프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4월 15일 소련은 오스트리아의 랍(Raab) 총리를 초청하여 오스트리아 조약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일련의 협상을 거쳐 5월 15일 미·영·불·소와 오스트리아가 조약에 서명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소련은 미해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 서방측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약 1년 전에 소련이 거부했던 초안보다 불리한 내용의 오스트리아 조약이 체

시초프간 권력투쟁으로인해 한 동안 중단되었으며 1955년 2월까지 별다른 중요한 화해조치가 실행되지 않았다.

결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일방적인 양보때문이었다. 이 조약은 오스트리아를 공산화할 수 있는 소련의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소련에게 분명히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조약이었다.

GRIT 전략이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적절한 위협을 수반하는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위자의 공개적인 협력의사 표명이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신이 고조된 상태에서 상대방은 행위자의 희생과 위협이 수반된 제의를 보다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오스트리아 조약 체결에 있어서 소련의 일방적인 양보는 동구권 국가들로 하여금 소련이 철수하고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전후 유럽에서의 패권을 인정받으려는 소련에게 불리한 사건이었다.

소련은 미국이 정상회담 제의라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였으나 GRIT 전략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조약 체결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달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의 GRIT 전략이 강화됨에 따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소련의 움직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었다. 1955년 5월 10일 미국은 소련을 정상회담에 초대했으며 6월 13일 소련은 이를 수용하였다.

소련의 GRIT 전략이 분명 아이젠하워 행정부로 하여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부내의 강경파인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이 소련에 대해 갖고 있는 나쁜 이미지를 바꾸고 보다 협력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지는

못했다. 즉 소련의 GRIT 전략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델레스는 소련이 진정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오히려 소련의 협력적 조치를 계략으로 평가절하하였다.⁵⁵⁾ 델레스가 정상회담에 동의한 것은 오스트리아 조약 체결을 주도한 소련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압력때문이었다.⁵⁶⁾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GRIT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내 강경보수파의 인식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들의 행동변화를 유발함으로써 GRIT 전략의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정상회담 제의에 상응하여 소련은 GRIT 전략을 계속 구사하였다. 5월 10일 정상회담 제의 몇 시간 후 소련은 유엔군축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에서 서방의 안을 상당히 수용한 군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소련은 미·중·소의 재래식 병력을 동등한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제의를 수용하고, 재래식 병력 감축에 앞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했으며, 단일국제군축기구의 창설과 현장검사원칙을 받아들였다. 이후에도 소련의 화해 조치는 계속되었다. 5월 13일 소련의 정부대표단이 유고의 티토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유고의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동구권의 결속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조치였다. 6월 7일 소련은 서독에 대해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고 아테

55) D. Larson, "The psychology of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 289.

56) D. Larson,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p. 51.

나워수상을 초청하였다. 1955년 7월 19~25일 제네바 정상회담이 있던 후에도 소련의 GRIT 전략은 계속되었다. 소련은 8월 13일 일방적인 병력감축을 단행하였으며 같은 해 핀란드의 포칼라(Porkkala) 군사기지에서 철수하였다.

소련이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달성 자체를 목적으로 GRIT 전략을 구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오스트리아 조약을 이용하여 서독의 재무장을 지연시키고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전후 유럽에서 영향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저개발국가의 중립화를 지향하는 지도자들을 겨냥한 외교정책의 포석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이러한 정책은 스탈린의 호전적 정책이 오히려 서방 국가들간의 결속과 서독의 재무장을 가져왔다는 소련지도자들의 인식에 바탕을 두었다. 후르시초프는 군사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기가 필요했고 농업을 개혁하고 경제력 향상을 위해 서방과의 긴장을 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⁵⁸⁾

오스트리아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소련이 구사한 GRIT 전략을 검토해 볼 때, GRIT 전략에 내재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⁵⁹⁾

첫째, GRIT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는 자신의 희생과 위협이 따르는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57) Ibid., pp. 52~55.

58) Ibid., p. 58.

59) Ibid., pp. 56~58.

둘째,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일련의 협력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상대방 진영 내 우호세력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나쁜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TFT 전략이 제시하는 단 한번의 유화적인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소련이 GRIT 전략을 구사할 당시 미-소관계는 「미래의 그늘」이 넓게 드리워진 상황은 아니었다. 양국간의 불신은 고조되어 있었고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의존도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GRIT 전략은 제한된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었다.

넷째, 상대방 정부의 강경파가 우세한 경우 국제여론과 상대방의 국내여론이 협력을 유도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GRIT 전략의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이 국내의 여론의 압력을 야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①협력조치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며,⁶⁰⁾ ②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일방적인 협력조치를 광범위하게 구사하고, ③협력조치가 행위자의 위협과 희생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중 세 번째 요인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불신이 지속되어 온 관계에서는 오스트리아 조약이나 유고방문과

60) 이는 협력조치가 외부의 압력이나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임을, 즉 행위자의 순수한 의도를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다. 라슨(Deborah Larson)은 이를 협력조치의 의도성(intentionality)이라고 표현하였다. D. Larson, "The psychology of reciprocity in interantional relations," p. 292.

같이 어느 정도의 희생이 수반되는 조치여야 만 상대방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GRIT 전략은 행위자가 어느 정도 일방적인 양보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의 국가간에 활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코헨도 미·소가 궁극적으로 상호주의를 달성하겠다는 희망으로 상대방에 대해 상당한 양보를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았다.⁶¹⁾ 또한 GRIT 전략은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간의 협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를 지닌다. GRIT 전략은 상호이익이 존재하더라도 불신이라는 심리적 장애때문에 이를 구현하지 못한다고 보지만 신뢰가 존재해야만 협력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적대관계의 행위자들간에도 제한된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에 걸쳐 불신과 긴장이 심화된 경쟁관계에서 행위자가 특정분야에서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잘 계획된 GRIT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신뢰의 조성이 바로 협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GRIT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 뿐아니라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⁶²⁾ 즉 상대방이 GRIT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와 함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61) R.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 11.

62) A.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p. 703.

다. Cross-Issue Linkage

국제정치에서 연계는 “행위자의 특정 현안에 대한 행위가 다른 현안에서의 상대방의 행위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⁶³⁾ 정의된다. 협력이론의 관점에서 「연계」(Cross-Issue Linkage) 전략은 여러가지 현안과 관심사항들을 서로 연관지어 타협안을 찾고 협력을 촉진하려는 구체적 목적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추진되는 전략이다.⁶⁴⁾ 연계전략은 다른 협력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아직 어떠한 상황에서 이 전략을 사용해야 효과적일지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도 개발되지 않았다.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전략은 현실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왔다. 연계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는 매우 융통성있는 전략이다. 연계전략은 크게 세부 현안들을 연계하는 경우와 세부 현안과 관련 당사자들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연계하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데 각각의

63) 영어원문은, “a state’s policy of making its course of action concerning a given issue contingent upon another state’s behavior in a different issue area.” A. Stein, “The politics of linkage,” *World Politics* (1980), p. 62.

64) 이러한 의도적 연계(advertent linkage)는 특정 현안에서의 상황전개가 연계를 위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현안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협력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우연한 연계(inadvertent linkage)와는 구분된다.

65) A.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p. 693. 하지만 현안의 연계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간단한 모델로 다음의 글에서 증명된 바 있다. C. Kim and T. Kim, “Diffuse reciprocity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note on a research program,” a paper presented at the 36th Annual Convention of ISA, Chicago, February 21~25, 1995.

경우에 대해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겠다.

(1) 세부 현안간의 연계

세부 현안들의 연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⁶⁶⁾ 특정 현안에서의 합의가 다른 현안에서 상대방의 구체적 행동이나 합의로 분명하게 연계되는 경우와 이 보다는 덜 구체적으로 다른 현안에서 상대방의 태도변화와 연계되는 것이다. 상호주의가 엄격히 견지될수록 보다 구체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 유럽에서 세부 현안을 직접 연계하는 전략이 동·서 양진영에 의해 구사되었다.⁶⁷⁾ 서독은 소련과 1970년 8월 12일 전후 국경선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고 폴란드와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서독을 비롯한 서방측은 베를린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서독 의회가 두 조약을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계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은 두 조약이 비준되지 않는 한 베를린 조약에 합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연계전략」(reverse linkage)을 펼쳤다. 결국 서방측과 소련은 1972년 6월 3일 세 가지 조약을 동시에 발효시킨다는 데 합의하였다. 당시 유럽안보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데도 양진영이 연계

66) Ibid., p. 694.

67) J. Dean, "Berlin in a divided Germany: an evolving international regime," in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100.

전략을 구사하였다. 소련은 미국이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베를린 조약의 체결, CSCE의 의제에 인권문제 포함, 「유럽재래식군사력감축협상」(Mutual and Balance Force Reduction: MBFR)에 소련의 참여 등을 연계하였다. 쌍방이 서로의 요구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타협이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와 영국간의 포클랜드 전쟁시에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 연계전략을 구사하였다. 당시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EEC차원의 경제제재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제재에 동참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EEC는 영국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고 경제제재와 EEC의 현안을 연계하였다. 즉 EEC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경제제재 참여의 댓가로 영국으로부터 EEC의 예산부담과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문제에서 양보를 얻어내었다.⁶⁸⁾

연계전략은 긍정적 연계(positive linkage)와 부정적 연계(negative linkage)로 구분할 수 있다.⁶⁹⁾ 긍정적 연계는 특정 현안에서 상대방이 협력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인 반면, 부정적 연계는 상대방이 비협력적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후자의 예를 들자면, 미국이 1971년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분쟁시 소련이 인도를 지원하는 경우 양국간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

68) L. Martin,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sanctions during the Falkland islands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92), pp. 164~171.

69) A.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p. 694.

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이 앙골라와 이디오피아 사태에 대한 소련의 개입이 SALT 협상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부정적 연계에 해당된다. 부정적 연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계에 사용된 위협에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 연계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와 유사하다.⁷⁰⁾

연계전략은 세부적이고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사되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소련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전략(grand strategy)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부정적 연계전략을 혼합하여 구사하였다. 즉 닉슨 행정부는 소련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망”(a web of incentives)을 창출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의 혼합전략을 구사한 것이다.⁷¹⁾

(2) 세부현안과 전반적 관계의 연계

행위자들간의 전반적 관계속에서 세부현안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세부현안과 전반적 관계사이의 연계도 의도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연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⁷²⁾

70) Ibid., p. 695.

71) Ibid., p. 694.

72) Ibid., pp. 697~700.

우선 전반적인 관계를 세부현안의 해결과 연계하는 경우이다. 우호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행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세부현안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용이하다. 예를 들어 1973년 10월 중동전쟁 당시 닉슨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양국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분쟁에서의 충돌을 피하고 이를 종식시키는 데 협력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용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연계하여 세부현안에 대한 합의 성사를 막으려 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행위자들간의 우호적 관계는 연계전략을 의도적으로 구사하지 않더라도 세부현안의 합의에 직·간접적 도움을 주게 되는 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첫째, 쿠바미사일 위기 이후 미·소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 속에서 핫라인(Hot-line) 협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세부적인 군비통제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둘째, 나이(Joseph Nye)도 핵비확산 레짐의 창설 초기에는 데탕트가 필요조건이었다고 보면서 우호적 관계가 세부현안의 합의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였다.⁷³⁾ 셋째, 미·소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⁷⁴⁾ 넷째, 데탕트 분위기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까지 미·소

73) J. Nye,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in a nonproliferation regime," in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350.

74) S. Lynn-Jones, "The incidents at Sea Agreement," in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496.

가 우주의 무장화를 자제하도록 무언의 협력(tacit cooperation)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⁷⁵⁾ 다섯째, 미·소 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양측의 정책입안자들이 우발적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을 현실화시켜 핫라인을 현대화하고 핵전쟁방지조약 등을 체결할 수 있었다.⁷⁶⁾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CSCE 과정이 시작되고 헬싱키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도 동·서 양진영간의 데탕트 분위기에 힘입은 바 크다.

반면에 행위자들간의 관계가 경색됨으로써 세부 현안 타결에 실패하거나 기존의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우주의 비무장화를 위한 노력은 미·소관계가 경색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소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대소정책이 강경하게 변하였다.⁷⁷⁾ 데탕트를 비판하면서 힘의 우위에 의한 강경정책을 구사한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의 조약위반 가능성을 집중 거론하면서 보다 강력한 검증을 요구하였다. 또한 SALT II 조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재해석하여 전략방위구상을 실천에 옮겼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소련과의 군비통제협상을 방

75) S. Weber and S. Drell, "Attempts to regulate military activities in space," in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395.

76) B. Blechman, "Efforts to reduce the risk of accidental or inadvertent war," in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477.

77) S. Weber and S. Drell, "Attempts to regulate military activities in space," pp. 404~405.

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었다. 세부현안에 대한 협상은 격식을 갖추고 제도화된 것일수록(*institutionalized*)⁷⁸⁾ 또한 관련 당사자들의 수가 많을수록(*multilateral*) 행위자들간의 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⁷⁹⁾

세부현안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도 연계전략에 해당된다. 미국은 소련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시작된 스톡홀름협상을 이용하여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⁸⁰⁾ 즉 미국은 스톡홀름협상을 소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였다.

세부현안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전반적인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1992년 말 북한이 대부분의 남북대화를 중단한 것은 한·미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이 일차적인 이유이지만 남북한이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상호사찰협상의 규정마련에 실패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정 현안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면, 이를 전반적인 관계와 구분해서 별도로 취급하는 「탈연계전략」(*de-linkage strategy*)

78) 핵비확산레짐이 미·소간의 긴장관계속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도 엄격한 레짐이 존재했고 양측간에 다양한 접촉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J. Nye, "The superpower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n Albert Carnesale and Richard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p. 182.

79) A.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p. 700.

80) J. Goodby, "The Stockholm Conference: negotiating a cooperative security," in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 169~170.

도 종종 구사된다. 미·소가 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문제를 양국의 정치관계와 분리하여 전문가인 해군 당국간에 조용히 협의하도록 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⁸¹⁾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NPT가 미·소간의 대립과 긴장 시대를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었던 것도 NPT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일치함으로써 이 문제를 양국간의 전반적인 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분리하여 다루었기 때문이다.⁸²⁾ 협력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탈연계전략은 협력도출의 필요성이 있는 특정 현안을 다른 현안에서 상대방이 행한 부정적 행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다루어 타협을 촉진하는 중요한 협력전략이다.

사안별로 상대방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수단으로 연계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실 국가간에 긴장이 조성될수록 일방적인 양보나 조건없는 도움보다는 경직된 연계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계전략을 구사하더라도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연계는 오히려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탈연계전략을 구사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81) S. Lynn-Jones, "The Incidents at Sea Agreement," p. 496.

82) J. Nye, "The superpower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185. NPT는 미·소의 근시안적 이익추구를 제한했으며 다양한 기구를 통한 정기적인 모임은 핵비확산 문제를 양국의 전반적인 정치관계와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초 양국이 다른 군비통제회담을 중단한 동안에도 핵비확산에 관한 모임은 계속 유지하였다. J.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7), p. 397.

있을 것이다. 탈연계전략의 채택은 사안의 중요성, 행위자들간의 관계, 국내의 여론 등을 기준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연계, 비연계 및 탈연계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Enhanced Contingent Restraint

「향상된 조건부제한」(Enhanced Contingent Restraint: ECR) 전략은 웨버(Steve Weber)가 미·소간의 전략무기통제협상을 PD 상황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소련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일련의 전략을 면밀히 추적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의해 야기된 「상호확실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개념에 기초하여 억지력이 유지되는 PD 상황하에서⁸³⁾ 상호협력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ECR 전략이 개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네 가지 전략이 모두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이중에서 ECR 전략이 가장 발전되고 정교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웨버는 「조건부제한」(Contingent Restraint: CR) 전략과 「조건부위협가중」(Contingent Threat of Escalation: CTE) 전략도 소개하였다. CR 전략은 상대방이 특정한 분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한 구체적 대응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⁸⁴⁾

83)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p. 18, 69.

이는 상대방에 대해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한 조건부”(permissive criteria of contingency)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ECR 전략은 상대방이 비협력적 행위를 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전략이다.⁸⁵⁾ CR 전략에 비해 덜 관대한 ECR 전략은 대응내용이나 시점을 미리 구체화할 필요는 없지만 선택 가능한 대안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비협력적 조치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즉 ECR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의 비협력적 행위시 자신이 취할 대응조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⁸⁶⁾ CTE 전략은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중단해야만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응조치를 자제하겠다고 선언하는 전략으로서 요구조건이 가장 “강력한”(demanding criteria of contingency) 전략이다. CTE 전략은 정해진 기한내에 상대방이 구체적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미리 발표된 행동에 착수한다.⁸⁷⁾ 가급적 갈등을 피하고 협력을 유도하려는 CR 및 ECR 전략과 달리 CTE 전략의 기본입장은 경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84) Ibid., p. 54.

85) Ibid., p. 55.

86) ECR 전략은 상대방의 도발적 혹은 비협력적 행위를 막고 평화로운 현상유지를 위해 강온양면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스타인(Arthur Stein)의 주장과 개념적으로 일맥 상통한다. A. Stein, *Why Nations Cooperate: Circumstance and Cho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p. 96.

87)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p. 18, 55.

웨버는 이상의 세 가지 전략중에서 ECR 전략이 협력을 유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다. CR 전략은 경쟁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유도하기에는 약하며 오히려 비협력적 태도를 유발하여 게임상황이 갈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CR 전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의 협력적 행위를 무조건적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악이용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해 이용당했다고 믿는 행위자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해 더 나쁜 이미지를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⁸⁾ 반면에 웨버는 CTE 전략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CTE 전략은 이를 구사하는 행위자와 상대방간에 입장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충분한 여지를 두지 않고 또한 상대방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상대방의 국내정치적 문제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현재 하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에 관한 문제일 뿐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⁸⁹⁾

한편 ECR 전략은 “관대한 상호주의”(permissive criteria of reciprocity)에 입각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대체적으로 균등한 양보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협력을 유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전략이다.⁹⁰⁾ ECR 전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88) 이러한 관점에서 웨버는 CR 전략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오스굿의 GRIT 전략도 경쟁관계의 군비통제협상에서 별 효용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Ibid., p. 281.

89) Ibid.

양보나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대응하는 시한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부여한다. 또한 상대방의 비협력적 행동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위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쟁을 유발하거나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준이 아닌) 정도의 대응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경쟁관계의 행위자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조성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전략무기통제라는 제한된 분야에서 개발된 전략을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전략 적용의 일반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략이 개발된 분야(예를 들어 안보분야 혹은 경제분야)에 따라 전략의 사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력전략이 개발된 바탕은 행위자들간의 기본적인 전략적 관계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어떠한 관계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구조적 상황”(structural circumstances)이 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행위자들간의 이러한 기본관계 혹은 기본구도는 분야의 독특성에 관계없이 밑바탕에서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CR 전략이 개발된 기본관계인 PD 상황이라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혹은 행위자들이 비협력적 태도를 취하기 보다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공동이익의 딜레마(dilemma of common interest)에⁹¹⁾ 놓여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 이 전략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웨버도

90) Ibid., pp. 276, 282.

91) A. Stein, *Why Nations Cooperate: Circumstance and Cho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pp. 32~36.

전략무기 통제분야에서 개발된 ECR 전략을 재래식무기 통제분야와 같은 다른 분야에 적용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⁹²⁾

ECR 전략은 소련과 「탄도미사일요격체제」(Anti-Ballistic Missile: ABM)를 규제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행정부에 의해 적절히 구사되었다. 1940년대 후반 ABM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미·소는 1960년대 들어 ABM의 개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단계에 도달하였다. 미국의 경우 1960년에 ABM이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소련과의 군비통제협정을 통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미행정부가 ABM의 통제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ABM에 큰 관심을 갖고 ABM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소련의 이러한 관심을 변화시켜 ABM의 개발·배치를 제한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은 PD로 설명되는 당시의 상황속에서 ECR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였다.

미국의 존슨 행정부는 먼저 CR 전략을 구사했으나 소련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실패하자 ECR 전략으로 선회하였고 존슨의 뒤를 이은 닉슨 행정부는 보다 강화된 ECR 전략을 구사하여 소련의 협력을 이끌어내었다.⁹³⁾ 1967년 1월 존슨 행정부는 소련과 ABM 협상을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는 전제하에 육군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Nike-X)의 개발과 생산·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

92) 1996년 4월 22일 Steve Weber와의 의견교환.

93)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p. 111 ~130.

에 요청하였다. CR 전략에 해당되는 이 조치는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조기에 배치하자는 미국내의 압력을 무마하는 데 기여했으나 소련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는 못했다. 미국은 소련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소련의 반응이 없을 때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존슨의 CR 전략이 소련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글라스보로(Glassboro) 정상회담에서 소련 수상 코시킨이 방어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소련은 미국이 자제하는 동안 ABM 개발을 지속하여 방어에 있어서 대미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ABM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한 미국은 ECR 전략에 근거한 「센티널 계획」(Sentinel Plan)을 발표하였다. 1967년 9월 18일 맥나마라(Robert McNamara) 국방장관은 중국에 의한 제한된 ICBM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지역방어체제」(light area defense system)인 센티널을 생산·배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센티널 계획은 미국내 10~15개의 주요 도시에 탄도미사일요격체제를 배치하도록 계획되었다. 센티널 결정은 1967년 초 존슨 행정부가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위해 예산을 요청한 것보다 강화·발전된 ECR 전략이다. 왜냐하면 ABM을 배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련의 비협력적 태도에 대응할 의지와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맥나마라 장관은 미국의 ABM 제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센티널 계획의 예산규제도 풀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센티널의 구체적 ABM 개발·배치 계획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신뢰도를 더 해 주었다. 맥나마라는 또한 소련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행정부가 ABM 배치를 가속화하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센티널 계획은 소련의 국익에 주는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었다. 미국이 장래에 소련과 ABM에 관한 군비경쟁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련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거나 전략무기제한협상의 타결시한을 못박거나 최후통첩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공식·비공식적으로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ABM의 배치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주요 군사목표물을 방어하기 위한 연구와 센티널 계획의 행정계통을 구분했으며, 군사시설물 방어를 위한 ABM 체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의 10% 정도만을 센티널 계획에 할당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이 소련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ECR 전략을 구사하되 소련을 가급적 자극하지 않도록 제한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련은 센티널 계획에 포함된 규제를 ABM 경쟁을 막으려는 미국의 계획된 전략적 행위로 인식하였다. 결론적으로 센티널 계획을 통한 ECR 전략은 소련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방적 양보로 무한정 손해보지는 않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과시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맥나마라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소련의 방어우위를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군비경쟁이라면 미국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의지와 기술 그리고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소련과 군비경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위협도가 낮은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⁹⁴⁾

미국은 1968년 1월 12억불의 예산승인을 요청함으로써 센티널 계획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약을 통한 ABM의 배치 금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ECR 전략에 대해 소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5월 체1부외상 쿠즈네초프(Vasily Kuznetsov)가 미국과 전략무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데 이어 6월 외상 그로미코는 ABM을 포함하여 공격과 방어무기를 모두 규제하는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일련의 후속접촉을 거쳐 양측은 공격과 방어무기를 모두 다루는 전략무기제한협상을 개최할 것을 8월 21일 발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소련의 체코 침공과 뒤이은 미국의 대선으로 계속 연기되었다.

1969년 3월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센티널 계획을 취소하고 새로운 탄도미사일요격체제인 「세이프가드 계획」(Safeguard Plan)을 발표하였다. 닉슨 행정부는 지역방위를 위한 센티널 계획이 억지력을 제고하지 못하며 소련이 센티널

94) Ibid., p. 121.

을 주요 군사시설을 위한 방어체제의 시초로 간주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센터널은 미국의 도시 주변에 핵탄두를 탑재한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미국내 여론의 비판도 받게 되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련의 행동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센터널 계획은 존슨 행정부의 CR 전략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소련의 협력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닉슨 행정부의 판단이었다.

3월 14일 닉슨이 발표한 세이프가드 계획은 소련의 대응내용에 따라 지연되거나 가속화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련의 단계적인 요격미사일배치계획이었다. 세이프가드는 일차적으로 탄도미사일사일로(Silo)를 방어하되 점차 방어 영역을 인구가 밀집한 도시로 확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제1단계에서는 미국의 도시에 대한 소련의 확실파괴능력(assured destruction capability)에 주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닛맨(Minuteman) ICBM 기지 2개소를 방어하지만 소련의 태도에 따라 이러한 제한은 철폐될 수 있다. 소련의 호응이 없는 경우 세이프가드 계획은 최종적으로 도시방어를 위해 12개소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닉슨은 소련의 행동을 보아가며 이러한 조치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도시방어까지 확대하기 위한 요건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세이프가드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련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양보나 시한 혹은 최후통첩 등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단지 연례적으로 미국이 받는 위협에 관한 정보와 진행 중인 군비통제협상에 대한 평가에 의거하여 세이프가드 계획의

이행을 검토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세이프가드는 센티널보다 더 정교하게 고안된 ECR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도시방어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계획을 천명했지만 센티널 계획의 도발적인 측면을 최소화하여 소련의 안보에 주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였다. 이는 세이프가드 계획이 요격미사일 생산·배치의 대상과 범위를 소련의 반응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련이 받는 위협과 안보딜레마의 충격(security dilemma repercussions)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1969년 여름 미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소련이 세이프가드 계획을 협력조치가 아니라 군비경쟁의 신호로 오인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세이프가드 계획의 방어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일도 감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미행정부의 관리들은 또한 ABM 배치를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에 세이프가드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방어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비협력적 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결국 세이프가드는 미국의 ABM 배치 의사를 단기적으로는 소련에 덜 위협이 되도록, 장기적으로는 소련이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든 ECR 전략이었다.

세이프가드에 기초한 미국의 ECR 전략은 소련과의 군비통제협상을 통해 구사되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략무기 제한협상은 1969년 11월 17일 헬싱키에서 시작되었는데 양측은

처음부터 ABM 체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970년 초 닉슨은 세이프가드 계획을 더 이상 실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일부 SALT 협상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대해 추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제3의 사일로 방어체제 공사와 4개 지역방어 체제에 필요한 부동산 구입을 포함하여 다소 축소된 2단계 세이프가드 계획을 실천하였다. 소련은 ICBM 개발·배치를 계속하는 가운데도 ABM 체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일련의 협상을 거쳐서 1972년 5월 26일 양측은 전략공격무기의 발사대 수를 제한하는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과 요격미사일을 양국의 수도와 ICBM 발사기지 한 곳에 각각 100기씩 배치하도록 허용하는 ABM 조약을 체결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ECR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여 ABM에 대한 소련의 인식을 바꾸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ECR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의 비협력적 조치에 대응하되 상호 협력을 유도할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ECR 전략을 수립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비협력적 행위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하부구조”(necessary infrastructure)를 개발하는 것이다.⁹⁵⁾ ECR 전략의 예로는 ABM의 센티널과 세이프가드 계획외에도 핵실험부분금지 조약(LTBT) 체결시 케네디 행정부가 강구한 “합참 안전보장방안”(JCS safeguards)을 들 수 있다.⁹⁶⁾ ECR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

95)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 310.

96) 케네디 행정부는 LTBT 체결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합

자는 자신의 협력적 자세가 상대방의 상응하는 협력적 자세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정도로 얽잡아 보여서는 않된다. 결국 상대방에 대해 강은양면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진 행위자에게 ECR 전략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ECR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일관성(consistency)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⁹⁷⁾ 상대방에게 모순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행위자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참이 요구한 다음 4개항의 안전보장방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①지하핵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②핵실험 관련 국가연구소를 유지함, ③필요한 경우 지상핵실험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함, ④소련의 조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수단을 개발함. I. Daadler, "The Limited Test Ban Treaty," in Albert Carnesale and Richard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p. 28.

97)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 311.

III. KEDO 체제 분석

KEDO를 탄생시킨 북·미 기본합의문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양국간 관계개선에 관한 다양한 현안들을 매우 복잡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KEDO 체제하에서의 남북한 협력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KEDO 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레짐이론은 KEDO 체제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적절한 틀을 제공해준다. 특히 협력이론에 따르면 레짐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본 장에서는 레짐이론적 관점에서 KEDO 체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KEDO의 대표적 사업인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현황과 향후 일정 및 사업추진상의 예상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레짐이론적 분석

가. 레짐: 협력촉진의 틀

1980년대 들어 레짐개념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레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다.

[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분야에서 참여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묵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principles), 규범(norms), 규정(rules) 및 의사결정절차(decision making

procedures)의 집합이다. 원칙이란 사실(fact), 원인(causation), 수정(rectitude)에 대한 믿음이다. 규범은 권리와 의무로 정의된 행위기준이다. 규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이다. 의사결정절차는 공동으로 선택하고 이를 집행하는 실천절차이다.¹⁾

레짐을 원칙, 규범, 규정, 및 의사결정절차로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인 시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²⁾ 사실상 원칙과 규범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고 규범과 규정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레짐의 원칙과 규범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자들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레짐을 창설함으로써 추구하는 목적으로, 규범은 합법적·비합법적 행위에 관하여 레짐 참여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⁴⁾ 규정과 규범이 약간 중복될 수도

1) 영어원문은, "a sets of implicit or explicit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actors'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area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iples are beliefs of fact, causation, and rectitude. Norms are standards of behavior defined in terms of rights and obligations. Rules are specific prescriptions or proscriptions for action. Decision-making procedures are prevailing practices for making and implementing collective choice." S.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2.

2) J.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p. 374.

3) S. Haggard and B. Simmon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7), pp. 493~494.

4) R.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있겠으나 규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원칙이나 규범보다는 좀 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⁵⁾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문화되는 반면 의사결정절차는 규정을 이행하는 수단과 절차라는⁶⁾ 측면에서 두 개념은 분명히 구분된다. 조약의 이행을 위해 설치되는 기구(institutions)는 의사결정절차의 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⁷⁾

이상에서 살펴 본 레짐의 정의에 따르면, 레짐은 원칙에서 규범으로 다시 규정과 절차 등으로 구체화된 정도만 다를 뿐 국가간 행위에 대한 하나의 명령체계(a system of injunctions)로 간주될 수 있다. 편의상 원칙과 규범을 대강의 명령(broad injunctions)으로, 규정과 절차 및 기구를 구체적 명령(specific injunction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⁸⁾ 대강의 명령은 구체적 명령을 통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규정과 절차 및 기구는 조약의 형태로 문서화된다.⁹⁾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 레짐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¹⁰⁾

하나의 레짐이 다루어야 할 범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

Political Economy, pp. 57~58.

5) Ibid., p. 58.

6) J. Finlayson and M. Zacher, "The GATT and the regulation of trade barriers: regime dynamics and functions,"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277.

7) J.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p. 392.

8) Ibid.

9) Ibid., p. 393.

10) 레짐이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성훈, 「군비통제 검증 연구: 이론 및 역사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23~43 참조.

다. 저비스(Robert Jervis)는 안보레짐(security regime)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미·소간의 전반적인 안보관계를 다루고자 하였다.¹¹⁾ 그는 미·소 관계에서 행위의 주요 동기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포괄적 안보레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¹²⁾ 한편 코헨은 레짐은 특정 조약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국제레짐은 효용 극대주의자들사이에 구체적 조약이 체결되도록 촉진하는 장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레짐의 주요 기능이 해당분야에서 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레짐을 형성하여 협상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¹³⁾

레짐을 행위자들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는 것과 달리 보다 세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다. 나이(Joseph Nye)는 미·소간의 전반적인 안보관계가 레짐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를 논하기보다는 안보관계를 “세부적인 안보 현안들로 구성된 모자이크”(a patchwork quilt or a mosaic of subissues in the security area)로 간주하고 이들중 일부를 규정과 기구를 갖춘 레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러한 그의 주장은 미·소간에 왜 일부 군사현안에서만 군비통제조약이 체결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비통제조약은 군사안보문제의 일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부분안보

11) R. Jervis, "Security regimes," in S.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187.

12) Ibid.

13) R. Keohane,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regimes," p. 153.

14) J.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p. 376.

레짐(a partial security regime)으로 정의될 수 있다.¹⁵⁾ 본 연구는 레짐개념을 보다 세부적으로 적용하려는 후자의 관점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겠다.

레짐의 형성은 레짐 참여자들의 개별 행동으로는 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결과(Pareto optimal outcome)를 도출할 수 없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참여자들이 레짐형성에 대한 공동이익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선호도를 가져야 레짐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국이 독자적인 군비증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야기되는 군비경쟁보다 상호협력과 조정을 통해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군비증강을 자제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 공동이익의 딜레마를 극복하여 군비통제조약(부분 안보레짐)이 체결될 수 있다.

레짐의 예로는 핵비확산레짐과 전략무기제한레짐을 들 수 있다. 레짐을 명시할 때 일반적으로 레짐을 구성하는 대표적 조약의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전자는 NPT 레짐으로 후자는 SALT 레짐으로 불리운다. NPT 레짐의 원칙은 핵무기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범은 ①핵보유국은 타국의 핵무장능력 보유에 도움을 주지 말 것, ②핵비보유국은 핵보유 노력을 포기할 것, ③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은 계속할 것, ④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적절한 검증을

15) Ibid., p. 393.

실시할 것, ⑤핵보유국은 핵군축 노력을 지속할 것 등이다. 이러한 원칙과 규범이 1968년에 체결된 NPT에 조문화되었다. 핵비확산레짐은 적어도 여섯 가지의 의사결정절차 혹은 기구를 두었다: ①NPT 이행에 관한 주기적인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 ② IAEA, ③「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④「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일명 「런던 클럽」(London Club), ⑤「국제핵연료주기평가회의」(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INFCE), ⑥미국의 「핵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NNPA).

이러한 기구를 통한 정보교환과 투명성의 제고는 조약참가국들의 「미래의 그늘」을 연장시킴으로써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이익의 증대를 도모하기에 충분했다.¹⁶⁾ 핵비확산레짐은 전반적으로 매우 잘 준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¹⁷⁾ 특히 미·소 양국은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익을 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를 포기하고 NPT 레짐을 유지시켜 왔다.¹⁸⁾

SALT 레짐의 원칙은 핵전쟁의 위협과 위기시의 불안정을 줄이는 것이다. 규범은 ①상호균형 견지, ②상호취약성 유지, ③공수전력 동시제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¹⁹⁾ 이와 같은 대강의 명

16) R. Smith, "Explai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nomalies fo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ring 1987), p. 275.

17) 전성훈, 「1995년 NPT 연장회의와 한국의 대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39~40.

18) J.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p. 397.

19) *Ibid.*, p. 394.

령들이 SALT I에 명시되었으며 「상설협의위원회」(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 SCC)와 같은 준수분쟁 해결기구도 창설되었다. 미·소는 전략무기제한레짐을 통해 무기보유 상한선을 설정·이행하고 「국가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NTM)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자는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단기적인 전략적 이익의 추구를 포기하였다.

나. KEDO 체제 분석

(1) KEDO 체제의 원칙·규범·규정·기구

제네바 기본합의문과 후속협정들을 토대로 한 일련의 합의사항들은 북한 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창설된 레짐으로 볼 수 있다. 북·미가 핵문제 해결과 관계개선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하고 기본합의문을 비롯한 세부협정들을 체결·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레짐은 기본조약인 기본합의문의 명칭을 빌려서 “기본합의문 체제”(Agreed Framework regime) 혹은 구체적인 실행기구인 KEDO의 명칭을 이용하여 “KEDO 체제”(KEDO regime)라고 명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KEDO 체제로 통일하고자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과 사안들은 레짐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KEDO 체제의 원칙·규범·규정·기구로 체계화될

수 있다.

KEDO 체제의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므로 중지되어야 한다. 둘째, 핵무기 개발 중단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북한의 권한을 훼손하거나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셋째, 핵무기 개발 포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정치·경제·안보상의 반대급부(positive incentive)를 제공한다. 넷째,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이 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KEDO 체제의 규범은 북·미 양국이 세 단계의 고위급회담을 진행하면서 합의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규정될 수 있다: ①핵무기 개발 중지와 NPT 준수, ②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제공, ③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콘소시엄의 유용성 인정, ④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금지, ⑤북한의 기존 핵활동 동결 및 핵시설 해체, ⑥상대방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⑦외교관계 정상화, ⑧경제제재 해제와 경제협력 강화, ⑨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사용과 사용위협 금지, ⑩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의 필요성 인정, ⑪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⑫IAEA 보장조치협정의 전면적인 적용.

이상의 원칙과 규범은 구체적인 규정으로 조문화되어 있다. 제네바 기본합의문은 포괄적인 합의문으로서 기본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에 보다 세부적인 합의사항들은 하위조약의 성격을

갖는 KEDO와 북한간의 공급협정, 10여개의 후속의정서, 연락사무소개설 합의문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거나 앞으로 규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합의문과 기타 세부조약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도 마련되어 있다.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과 관련하여 KEDO가 설립되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작업이 미국측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북·미간의 뉴욕채널이 가동되고 있고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북한은 또한 군사분야에서 북·미 군사당국자간 대화채널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2) KEDO 체제의 의의

KEDO 체제는 레짐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KEDO 체제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 등 KEDO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간 접촉의 내용을 변화시킴으로써 상호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²⁰⁾ KEDO 체제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서로에 대한 의무사항과 규칙이 제도화됨으로써

20) 악셀로드와 코헨은 레짐을 행위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내용을 변화시킴으로써 상호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보았다. R. Axelrod and R.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in K.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250~251.

KEDO 체제에 참여한 행위자들간 접촉의 형태와 내용이 KEDO 체제 창설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KEDO 체제는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체제의 규범과 규정이 발전적으로 확대·개편될 수 있으므로 참여자들간의 보다 건설적인 관계설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KEDO 체제는 협력을 유도하는 바탕이 되는 상호주의를 제도화하고 강화함과 동시에 이미 합의한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범과 규정을 만들어냄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유지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²¹⁾

둘째, KEDO 체제가 상호접촉의 구도를 경쟁적 관계에서 공동이익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현하는 구도로 바꾸었다는 사실은 KEDO 체제내에서 참여자들간에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KEDO 체제의 창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KEDO 체제내에서 파생되는 문제들 뿐아니라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고유 사안들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소개한 협력전략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전략의 구사를 촉진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기구의 창설 필요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레짐개념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²⁾

21) 예를 들어 미국의 평화연구소는 KEDO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을 수시로 조율할 수 있는 가장 활동적인 창구이며 남북한이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KEDO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 Coming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od Crisis, Economic Decline,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6), p. 5.

22) 레짐의 장점은 특정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경쟁을 규제하는 원칙

셋째, KEDO 체제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교환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개최하는 등 의사소통의 양과 질을 증대시킴으로써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KEDO 체제의 정보제공 기능을 통해 참여자들은 KEDO 체제가 다루고 있는 관심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KEDO 체제를 통한 개방과 투명도 및 예측가능성의 향상은 참여자들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함과 아울러 「미래의 그늘」을 연장시킴으로써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이익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KEDO 체제의 성공적인 이행은 참여국들간의 관계개선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레짐이 갖는 정보제공 기능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검증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KEDO 체제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합의를 향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은 정보교류의 확대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보부족을 해소함으로써 KEDO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가 난방과 전력생산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시설에 중유소비량을 관측하기 위한 측정기를

과 절차 및 기구의 수립에 대한 합의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기구의 운영에 주목함으로써 특정게임의 해결을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게임이론의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 p. 13.

설치하였다.²³⁾

넷째, 분명한 원칙과 적절한 규범을 갖추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구비한 KEDO가 존재한다는 것은 KEDO 참여국들 간에 관계가 악화되어도 KEDO가 관할하는 영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NPT 레짐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NPT 레짐의 경우 미·소간의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는 엄격한 레짐이 존재했고 양측간에 다양한 접촉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KEDO의 존재는 적어도 KEDO 참여국들간에 완전한 관계 단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KEDO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실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도 불구하고 중유공급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미의 관계자들도 경수로사업이 약간의 지장을 받겠지만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²⁵⁾ 경수로사업이 당분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23) 북한은 1995년 6월 KEDO가 제공하는 중유를 소비하는 시설에 측정기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청진, 선봉 및 평양 화력발전소에 측정기가 설치되었고 북한은 측정된 기록을 인쇄하여 두달에 한 번씩 뉴욕의 KEDO 사무소에 팩스로 보냈다. KEDO와 북한은 1996년 7월 북창, 동평양 및 순천 화력발전소에도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된 기록을 보내는 기간을 2주에 한 번씩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4) J. Nye, "The superpower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182.

25)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한국경제인동우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경수로사업의 연내착공이 물리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제네바합의문, 4차회담 및 경수로사업 등 국제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世界日報』, 1996년 10월 10일. 로드(Winston Lord)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방한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수로사업에 냉각기가 필

이유중의 하나는 사업이 초기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업의 자체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2. 이행현황과 향후일정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간에 1995년 초부터 진행된 경수로전문가회담은 목표시한인 1995년 4월 21일을 넘기며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수로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낀 양측은 1995년 5월 19일~6월 12일 김계관 외교부부장과 허바드 미국무부차관보간의 준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준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한국형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용하였다. 북·미는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국형경수로 2기를 제공하도록 설립협정문에 명시된 KEDO가 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주계약자 선정과 이에 따른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한국형경수로를 지칭하는 표현을²⁶⁾ 사용하

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활동 동결을 위한 제네바합의와 경수로사업 등은 자산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東亞日報』, 1996년 10월 13일.

26) *Joint U.S.-DPRK Press Statement, June 13, 1995, Kuala Lumpur.* “KEDO가 노형선정권을 갖는다”, “두개의 냉각재 배관을 가진 1천 메가와트 발전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 및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되어 현재 생산중인 개량형” 등의 표현이다.

여 한국형경수로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명시하였다.

준고위급회담의 타결을 계기로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양측은 199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협상을 개최하여 마침내 12월 15일 공급협정에 서명하였다. 공급협정은 경수로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18개조와 4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데, 10여개의 부속의 정서가 별도로 체결되어야 한다.

KEDO와 북한간에 공급협정이 타결된 이후 경수로사업은 주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 왔다.²⁷⁾

첫째, 주계약자 선정과 관련하여, KEDO는 1996년 3월 19일 개최된 집행이사회에서 한전을 대북 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로 공식 선정하였다. 이에 앞서 한전은 경수로건설을 위한 사업전예비작업(pre-project services: PPS)을 수행하기 위해 KEDO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형측량, 시공계획수립, 건설비산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한국측 기술진을 중심으로 1995년 12월 중순부터 약 1개월간 제3차 부지조사가, 1996년 1월 중순부터 역시 1개월간 제4차 부지조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제4차 부지조사를 위해 대형시추장비, 물리탐사장비, 시추용 드릴 등 지질조사용 장비와 부품이

27) 현재 KEDO는 한·미·일 등 3개 집행이사국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및 칠레 등 7개 일반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브루나이,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영국 등이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1996년 7월 현재 모금된 KEDO 기금 총액은 약 8,700만불로서 이는 KEDO 운영, 중유제공 및 기타 관련 사업에 사용되었다.

1월 14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나진항으로 운송되기도 하였다. KEDO는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리 해변에서 1.5km 떨어진 지역 100만여평을 경수로 건설부지로 내정한 상태이다.²⁸⁾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된 제5차 부지조사에서는 북한이 건설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평양~신포간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상당한 준비중임이 확인되었다. 7월 초에는 제6차 부지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제6차 조사에서는 부지경계선 설정과 관련된 쟁점들이 협의되었다. 아울러 부지 인근 500여 가구의 퇴거에 따른 보상으로 KEDO가 준비한 생활물자의 전달식이 개최되었다.

셋째, KEDO와 북한은 1996년 4월 8일부터 후속의정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여 1996년 7월 11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3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5월 22일 합의된 「KEDO의 법적 지위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는 법적 지위와 특권·면제, 영사보호, 안전 및 재산보호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EDO는 북한내에서 법인격을 가지며 계약체결, 동산·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소송제기, 북한당국과의 협상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면책대상지역은 경수로 사업부지, 사업관련지역(associated area)²⁹⁾ 및 사업연계지역(related area)³⁰⁾으로 구성되어 있다. KEDO와 KEDO의 자산은 모든 형태

28) 「東亞日報」, 1996년 2월 28일.

29) 항만, 공항, 통행로 등 인원·물자의 수송에 관련되는 장소.

30) 경수로사업 관련 회의와 기타 활동을 위해 임시로 선정되는 지역과 비상사태 및 여타 이유로 도달하는 지역.

의 법적, 행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고 KEDO 직원에게는 외교특권을, 주계약 및 하청기업 직원에게는 준외교관 특권을 부여하며 직원가족의 동반거주가 허용된다. KEDO가 부지내 질서유지를 책임지며 북한은 KEDO의 질서유지에 간섭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은 KEDO 계약자 인원이 북한관습을 따르도록 요구하지 못하며 이들에 대해 정치·사회적 의무도 부과할 수 없다.

「KEDO와 북한간의 통신의정서」는 6월 14일 타결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북한의 국내·국제 우편서비스, 전화 및 팩스 등 북한내 통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 통신수단을 설치·사용할 수 있으며 부지준비 기공식으로부터 24개월 후 독자적 위성통신수단을 설치하고 휴대용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역시 6월 14일 합의된 「KEDO와 북한간의 통행의정서」는 공로와 해로를 명시하고 있다. 항공수송은 북경과 함흥인근의 선덕공항을 이용하며 기초 굴착공사 시작전까지 추가 항공로를 지정해야 한다. 해상수송의 경우, 바지선 항로와 인원 및 물자를 위한 항로 등 두 개의 남북한 직항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의정서에 규정된 통행로와 출입지점을 임의로 선택하며, 이 경우 무비자가 적용된다.

한편 주계약자인 한전은 1996년 7월 15일 경수로사업의 개략사업비(Rough Order of Magnitude: ROM)를 산정하여 KEDO에 제출하였다. 개략사업비는 건설비용 49억 2천만불과 부대비용 4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추후 수정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공식사업비는 결정되지 않았다. KEDO는 1996년 10월 미국의 Duke사(Duke Engineering and Services: DE&S)를 기술자문사(Technical Support Consultant: TSC)로 공식 선정하였다.

공급협정 체결 이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경수로사업은 1996년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먼저 후속의정서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KEDO와 북한은 부지인수와 북한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1996년 7월 20일부터 진행하였다. 협상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수준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잠수함 사건이 터진 후인 1996년 9월 26일 임금수준을 북한 내 외국기업수준(월 80~110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잠수함 사건을 이유로 한·미가 두 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제7차 부지조사단의 방북도 취소되었다. 아울러 1996년내에 경수로사업의 착공 가능성도 무산되었다. 잠수함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국과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경수로사업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7년 상반기에 가서야 경수로사업의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경수로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부지준비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인수 및 유료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가 서명되면 이미 합의된 세 개의 의정서와 함께 부지준비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다. 따라서 경수로

사업의 재개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부지준비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둘째, KEDO와 북한간에 후속의정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양측이 추가로 협상해야 할 의정서에는 품질보장, 의무불이행시 조치, 훈련프로그램, 인도일정과 북한의 의무사항 이행, 경수로 가격조건, 안전점검, 핵사고시의 처리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의정서 등이 있다.

셋째, 경수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인 한전과 KEDO간의 주계약(상업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KEDO는 1997년 말까지 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넷째, 자원분담 문제에 대한 협의도 한·미·일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KEDO가 한전이 제출한 개략사업비를 바탕으로 사업비용을 결정할 경우 한·미·일은 이를 토대로 비용분담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각국은 분담 규모가 확정된 후에 자원조달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합의된 후속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관련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3. 사업추진상의 예상문제점

경수로사업 추진상의 예상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연계전략의 산물인 기본합의문 체제에 내재해 있는 전략적 차원의 문제점이다. 둘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문제점들이다.

가. 전략적 차원의 문제점

북·미 기본합의문이 연계전략의 결과라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미슨(Amy Smithson)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해체와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는 획기적인 사건들이 함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북·미간의 합의는 상호의존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³¹⁾ KEDO 체제의 특성과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는 보다 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되기도 하였다.³²⁾

기본합의문은 세심한 가르침을 받아 흥망을 함께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동사업이다... 기본합의문은 양측으로 하여금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거의 같은 정도의 대응력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양측은 단독으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기본합의문이 “씨줄과 날줄”식으로 짜여진 고도의 연계전략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어느 일방이 기본합의문상의 특정 부분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다른 부분의 이행을 거부

31) A. Smithson, “North Korea” in T. Bernauer, J. Goldblat and D. Ruloff, eds., *Positive Incentives in Arms Control* (Zürich: ETH, 1996), p. 1.

32) S. Kim, “North Korea in 1994: brinkmanship, breakdown, and breakthrough,” *Asian Survey*, vol. 35, no. 1 (January 1995), p. 19. 영어원문은, “[The Agreed Framework is] a carefully choreographed swim or sink together joint venture of reciprocal steps. ... Each side retains unit veto as the accord gives both sides more or less equal leverage, if not equal benefits, against renegeing.”

할 경우 기본합의문의 전체적인 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북한은 미국 공화당이 경수로사업 중단 등 강경한 내용의 대북정책을 발표하자 미국이 원한다면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³³⁾

한편 KEDO 체제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들이 기본합의문 이행과 연계될 수도 있는 데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잠수함 사건에 따른 경수로사업의 연기는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사안과 경수로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선례가 되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경수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양측에 의해 유사한 연계전략이 구사됨으로써 사업이 재차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잠수함 사건의 연계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북한은 KEDO체제 외부의 사건과 경수로사업의 연계를 계기로 다국적 콘소시엄인 KEDO의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KEDO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이 경수로사업을 책임지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³⁴⁾ 둘째, 북한은 경수로사업 지연에 대한 대응으로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단하고 핵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³⁵⁾ 이 경우 북한의 핵활동

33) 외교부대변인 발언, 「조선중앙방송」, 1996년 8월 24일.

34)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10월 20일 김정일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한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경수로사업이 중단되어도 자신의 모든 직권을 이용하여 미국이 의회의 승인하에 경수로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선중앙방송」, 1994년 10월 22일.

재개를 원치 않는 미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경수로사업과 기타 사업을 연계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경수로사업의 지연으로 경수로 인도일정이 연기될 경우 북한이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불을 거부·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⁶⁾

나. 세부현안별 문제점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경수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주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중유제공 문제

경수로 1기가 완공되는 해까지 매년 50만톤씩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약 5,500~6,000만불)의 분담

-
- 35) 북한은 잠수함 침투사건을 연계하여 경수로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지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작업의 중단을 포함하여 핵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대변인 발언, 「조선중앙방송」, 1996년 10월 15일; 「한겨레」, 1996년 11월 7일; 「조선중앙통신」, 1996년 11월 15일.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朝鮮日報」, 1996년 11월 18일. 북한은 또한 11월 2일 강석주 외교부 제1부 부장 명의의 서한을 로드(Winston Lord) 미국무부 차관보에 전달하고 경수로사업이 무기 연기될 경우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앙일보」, 1996년 11월 16일; 「한겨레」, 1996년 11월 20일.
- 36) 북한이 인도일정 지연에 대해서 기본합의문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불을 지연·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1996년 12월 6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은 경수로비용 조달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만 중유제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중유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문제 조차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³⁷⁾ 미국은 중유비용 부담의 일부를 일본측에 전가하면서³⁸⁾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을 KEDO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참여범위와 KEDO내에서 EU의 지위 등에 대해서 EU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KEDO와 EU간에도 합의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중유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수로사업 시한이 당초의 예상(목표시한 2003년)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유제공을 위한 재원마련은 경수로사업이 부진할수록 상당한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기술자문사(TSC)의 위상과 역할

기술자문사((Technical Support Consultant: TSC)의³⁹⁾ 위상과 역할

- 37) 예를 들어 미의회는 미행정부가 중유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청한 2,500만불중 1,200만불의 삭감을 시도한 바 있다. 「世界日報」, 1996년 6월 22일.
- 38) 이와 관련, 일본은 1996년 2월 22일 1996년도 중유비용으로 1,900만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39) 한·미·일은 1996년 3월 집행이사회에서 「프로그램코디네이터」(Program Coordinator: PC)라는 명칭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PC의 제한된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명칭을 「기술자문사」(TSC)로 대체한 바 있다.

에 관한 문제이다. KEDO가 선정한 미국기업이 TSC로서 경수로 사업의 이행에 있어 KEDO에 대한 기술자문을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이다.⁴⁰⁾ 또한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에 따르면 TSC로 선정되는 미국기업은 주계약자인 한국기업의 하청업체⁴¹⁾로서 경수로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기업만을 상대하기 위해 TSC의 독립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국도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TSC의 권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⁴²⁾ 앞으로 경수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TSC로 선정된 듀크사의 위상과 활동범위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TSC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3) 비용분담 및 사업배분 문제

한·미·일간에 경수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고 사업을 배분하는 문제이다. 비용분담과 사업배분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관련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경수로 공급협정과 한전의 주계약자 선정을 통해 한국형경수로의

40) 칼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의 공동언론발표문 제Ⅲ항.

41) 클린턴 대통령이 1995년 6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

42) 이와 관련, 미국이 TSC의 대북 접촉창구 역할외에 설계 감리권, 설계변경 승인권, 주계약자의 비용지출 승인 및 감리권 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경수로사업을 주도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世界日報」, 1995년 7월 22일.

채택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경수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몇 퍼센트씩 분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업을 맡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3국간에 합의되지 않았다.

제네바 기본합의문 타결 직후 한국은 50% 조금 넘는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승주 외무장관은 KEDO의 전체예산은 경수로 건설비용 35억달러를 포함해 약 45억달러로 예상되며 한국은 컨소시엄의 전체 예산중 절반이나 그보다 약간 적은 비율을 부담하되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 지원에만 참여하고 대체에너지 제공이나 사용후 핵연료봉 이전, 핵시설 해체 등 그밖의 분야에서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⁴³⁾ 한국이 중심적(central) 역할을, 일본이 중요한(significant) 역할을, 미국이 상징적(symbolic)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본합의문 체결 당시 3국간의 묵시적 합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의 비용 분담율이 70%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의 분담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70% + α , 일본이 20%, 미국 및 기타 KEDO 참여국들이 나머지 10% - α 를 부담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양해사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3) 「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28일. 그는 또한 경수로건설과 사용후핵연료의 제3국 이전, 핵시설 해체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컨소시엄의 전체예산 45억달러에는 경수로 건설비 35억달러, 대체에너지 비용 3억달러,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 및 제3국 이전비용 1억달러, 건설중인 흑연감속로 2기 및 방사화학실험실, 연료봉 생산공장 등 핵시설 해체비용 5억달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경수로 건설 비용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KEDO가 전체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이 경수로 건설비용을 당초 예상보다 훨씬 과다하게 지불하거나 기타 비용의 지불도 때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형경수로가 채택되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된 만큼, 그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부분의 비용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특히 미행정부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정부담 증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경수로 건설 비용과 중유제공 및 기타 소요비용을 모두 합산해서 분할하자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업배분과 관련하여 한전을 비롯한 한국의 경수로건설 관련 기관들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부품은 모두 한국기업에 배분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기업이 핵심부품을 생산해야 한국형경수로가 보장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경수로비용 지출을 국민과 의회에 납득시키기 위해 자국이 부담하는 경수로 사업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핵심부품제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으로써⁴⁴⁾ 일부 사업을 일본 등 외국에 분배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44) 「朝鮮日報」, 1996년 2월 24일.

(4) 경수로비용 재원마련과 국회동의 문제

한국내에서 경수로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경수로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의 국공채발행, 한전의 起債 발행, 한전주식 판매 혹은 통일기금 이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경수로 건설 비용은 기존에 거론되어 온 40~45억달러를 초과함으로써 한국의 비용부담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⁴⁵⁾ 따라서 재원을 마련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용부담액이 기존의 추정액을 크게 초과할 경우 대북 쌀지원 문제에서와 같이 경수로지원에 대한 여론의 비난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재원지출에 대한 국회동의에 실패할 경우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초래될 뿐아니라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지장을 줌으로써 한·미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45) 경수로 건설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또한 대북 경수로사업 비용은 울진 3·4호기와 비교할 때 부지매입비, 민원보상비 등 일부 비용은 줄어들 수 있으나 가격인상요인(예: 수송비, 인건비, 통신·통행비용, 하부구조건설 등)으로 인해 전체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울진 3·4호기의 건설비용인 40~45억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대북 경수로지원의 경우 최소한 현재가격으로 50~55억달러, 완공시 가격으로 60~65억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5) 북한의 원자로설계 변경 요구

북한은 한국형경수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수로건설을 위한 북한 당국의 인허가 과정에서 경수로의 안전기준을 미국 등 외국기준에 따를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원자로의 일부 설계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⁴⁶⁾ 이 경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독자적인 설계변경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로 인해 TSC의 역할이 강화되고 미국의 사업주도권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 둘째, 한국이 북한의 설계변경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설계를 변경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수로 건설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경수로 인도일정 지연에 따른 증유비용의 증대와 북한의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6)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 및 NPT 복귀 지연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는 기본합의문(제4조 3항)에서 경수로사업의 상당 부분 완료시 그리고 주요 부품 인도전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

46) 최근 국내 원자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를 북한이 수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에 간접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특별사찰 수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기본합의문 제4조 3항은 특별사찰 실시를 원칙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기본합의문과 후속합의서 어디에도 북한이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2곳의 미신고시설은 군사시설로서 IAEA 사찰대상이 아니며 5개 동결시설들에⁴⁷⁾ 대한 임시·일반사찰 수용은 IAEA 보장조치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의미하므로, 기본합의문(제4조 3항)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상당 부분 완료시 그리고 주요 부품 인도전에 수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⁴⁸⁾ 따라서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이 각종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특별사찰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IAEA 보장조치협정의 전면적 이행이 지연되는 만큼 이를 핵심 의무사항으로 설정한 NPT로의 완전한 복귀도 연기되고 있다.

47) 북한이 IAEA에 신고한 16개 핵시설중 기본합의문에 의거하여 활동을 동결하기로 한 5개 시설은 ①5MWe 실험용원자로, ②50MWe 원자로, ③200MWe 원자로, ④방사화학실험실, ⑤핵연료제조공장 등이다.

48) 기본합의문 제3조 4항은 “경수로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IAEA 보장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7) 사용후핵연료의 사찰 및 이전

5MWe 원자로에서 추출한 사용후핵연료의 사찰과 이전 문제이다. 기본합의문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찰을 실현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에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찰까지 포함되는 견해는 없다. 제2차 북·미 폐연료봉전문가회담(1995.1.18~1.23, 평양)에서 양국은 5MWe 원자로에서 추출한 사용후핵연료를 일단 건식보관한 후 제3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⁹⁾ 1994년 5월 인출되어 수조에 저장되었던 사용후핵연료는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팀이 화학처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996년 5월 1일 건식보관⁵⁰⁾ 작업이 시작되었다.

IAEA는 기본합의문보다 NPT를 중시하는 가운데 북한이 NPT 탈퇴유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IAEA는 북한이 전면보장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건식보관 작업과정에서 일부를 발취·분석하여 플루토늄양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IAEA가 건식보관 작

49) 사용후핵연료의 제3국 이전은 제1호기 경수로의 핵심부품 인도시작시 개시되어 제1호기 경수로 완공시 완료될 예정이다.

50) 사용후핵연료를 밀폐된 용기에 저장(canning)하는 것을 말한다. 용기당 80개 정도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8,000개의 연료봉을 위해 약 100개의 용기가 사용될 것이다. 1996년 10월 말 현재 약 4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며 1997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장입한 용기는 제3국 이전시까지 다시 수조에 저장될 예정이다.

업중에 플루토늄양 측정을 실시하려는 이유는 현 단계에서 사용 후핵연료를 측정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일단 건식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검사하기는 쉽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이전될 경우 검사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⁵¹⁾ 그러나 IAEA의 사용후핵연료 측정 요구는 북한의 완강한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동결대상인 5MWe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플루토늄 측정은 동결상태의 감시 수준을 벗어나는 조치이기 때문에 경수로사업의 상당 부분 완료시 그리고 주요 부품 인도전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IAEA는 북한이 NPT상의 의무사항인 핵안전협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을 비판하고 있다.⁵²⁾ 유엔의 대다수 회원국들은 이러한 IAEA의 입장을 수용하여 1996년 10월 29일 북한에 대해 NPT와 IAEA 안전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⁵³⁾

반면에 미행정부는 기본합의문 타결 이후 사용후핵연료 사찰

51)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플루토늄 측정의 정확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일단 건식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꺼내어 사찰하는 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후핵연료의 사찰 문제가 잊혀질 가능성이 있다.

52)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1996년 10월 28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북한의 포괄적인 핵계획을 파악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확산 금지약속은 NPT의 전면적인 이행과 핵관련 정보제공의 확대를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양일보」, 1996년 10월 29일.

53) 「東亞日報」, 1996년 10월 31일.

문제로 IAEA와 북한간에 갈등이 빚어진 최근까지 이 문제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제재까지 추진된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IAEA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미국은 플루토늄 측정을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간주하고, 북한이 기본합의문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기본합의문을 이행함에 따라 과거 핵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⁵⁴⁾ 미국은 IAEA의 특별사찰 문제에서와 같이 매우 여유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플루토늄 측정은 북한의 과거 핵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5MWe 원자로의 과거 운전역사에 대한 정밀 관측이 가능하다. 미국과 IAEA는 5MWe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찰을 과거 핵의혹 해소의 관건으로 간주하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1994년 5월 5MWe 원자로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임의 추출하자 한·미를 중심으로 유엔제재가 추진되고 한반도에 전쟁위기까지 조성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IAEA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할 것인 반면, 과거 핵의혹을 카드로 활용하려는 북한은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5MWe 원자로에서 사용된 폐연료봉의 제3국 이전과 관련하여 공급협정(제3 부속서 9항)은 제1호기 경수로의 핵심부품 인도시

54) 번스(Nicholas Burns) 미국무부 대변인 1996년 5월 3일 발언, *USIA Wireless File*, May 6, 1996.

이전을 시작하여 동 경수로 완공시점까지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연료봉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전대상국 및 이전 후의 최종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바 없다. 사용후핵연료의 제3국 이전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구로서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강력히 거부했던 조치이다. 더욱이 공급협정(제Ⅷ조 3항)은 KEDO가 요구할 경우 북한이 경수로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소유권 포기과 제3국 이전에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측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원자력 산업을 제한하고 대외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다. 한편 미에너지부의 커티스(Charles Curtis) 차관은 제3국으로 이전된 폐연료봉의 재처리 여부에 관해 북·미간에 합의된 바는 없으나 재처리를 하더라도 추출된 플루토늄을 북한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⁵⁵⁾

보관 및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은 제2차 폐연료봉전문가회담에서 5MWe 원자로에서 추출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보관한 후 제3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KEDO 집행이사국 사이에 보관과 이전 비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는 1996년 11월 현재 1,790만불이 소요되었으며 미국이 전액을 부담하였다.⁵⁶⁾

55) C. Curtis, *Testimony for Charles B. Curtis Under Secretary of Energy before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U.S. Senate, January 19, 1995, p. 12.*

56) 경수로기획단 관계자의 인터뷰, 1996년 10월 30일.

(8) 핵시설 해체 참여 및 해체비용 마련

북한의 핵시설 해체시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해체비용을 마련하는 문제이다. 공급협정(제3 부속서 8항)은 북한의 동결된 핵시설의 해체를 경수로 제1호기 완공시 시작하여 제2호기 경수로 완공시점까지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체과정에 한국의 참여나 해체비용의 재원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합의는 없는 실정이다.

(9) 사업완료시한 지연 및 손해배상 청구

기본합의문(제1조 1항)은 2,000MWe 규모의 경수로를 2003년(목표시한)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공급협정 체결이 8개월이나 지연된 바와 같이 목표시한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인도일정에 관한 의정서의 협상은 경수로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협정(제XIV조)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지연을 용납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에 대한 개념규정은 모호하다. 따라서 북한이 건설완료시한이 지연됨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기타 대미 및 대남 의무사항에 대한 불이행을 위협하거나 경수로대금의 상환을 지연·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 송·배전망 건설 문제

KEDO는 공급협정 체결시 별도의 서한을⁵⁷⁾ 통해 법적·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의 송·배전망 시설 확충에 필요한 상업차관 획득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송·배전망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으며 송·배전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송·배전망 문제는 경수로의 상업운전 개시 이전까지 해결되어야 한다.

57) KEDO 사무총장 명의로 1995년 12월 15일 북한의 허종대사에게 보낸 서한.

제IV장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 방안

본 장에서는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한 두 당사자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과 방향을 제시하고 네 가지 협력전략의 운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KEDO내 다른 참가국들의 역할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남북한 양자간의 협력증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KEDO와 관련이 없는 남북한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경수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에 대한 사안별 세부대책도 제시하였다.

1. 기본요건

가. 남북한 협력증진의 기본조건

행위자들간에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행위자들이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하며, 둘째는 행위자들이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성향을 지녀야 한다. 현재의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적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는 협력증진을 위한 두 가지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사안별로 양측이 공동이익의 존재를 인식할 경

우 협력전략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상호협력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협력이 가능한 관계설정

행위자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협력이 가능하다. 즉 행위자들이 공동이익의 딜레마(dilemma of common interest)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공동이익의 딜레마는 한 행위자 혹은 두 행위자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독자적으로 선택하여 초래되는 나쁜 결과(Pareto-deficient outcome)보다 상호협력을 통해 차선책이지만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Pareto-optimal outcome)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즉 행위자가(들이)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이익극대 전략을 선택할 경우 상호협력을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다. 게임이론적으로 행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는 하나의 안정점(equilibrium)이 존재할 때, 공동이익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공동이익 딜레마의 대표적인 사례가 PD 게임이다.

PD 게임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는 두 행위자가 모두 비협력적 전략을 우위전략(dominant strategy)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공동이익의 딜레마를 적절히 묘사하는 게임이다.¹⁾ PD 게임은 행

1) PD 게임을 묘사하는 2×2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다.

또 다른 공동이익의 딜레마 상황은 아래의 2×2 매트릭스로 표시된다.

위자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못한 결과(Pareto-inferior outcome)을 얻게 되는 상황이다. 환원하면 PD는 개인적 합리성(individual rationality)과 집단적 합리성(group rationality)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전자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행위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위전략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기준이다. 반면에 후자는 개인적 합리성에 의거한 행위의 결과보다 더 나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기준이다. 즉 PD 게임은 상호 협력과 경쟁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황(*mixed-motive or non-zero sum game*)이다.²⁾

PD를 포함한 공동이익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협력을 달성한 후에도 행위자들이 합의사항 위반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협력의 상

	C	NC		C	NC
C	3, 3	1, 4	C	3, 4	1, 2
NC	4, 1	2, 2	NC	4, 1	2, 3

“C”는 협력적(cooperative) 전략을, “N”은 비협력적(noncooperative) 전략을 나타낸다. 우측의 게임은 두 행위자중 PD 선호도를 갖고 있는 행위자만이 우위전략을 보유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다른 행위자는 PD 선호도를 보유한 상대방의 행위를 조건으로 절대이익을 최대화하는 조건부 전략(contingent strategy)을 구사한다. 이 경우 PD 선호도를 보유한 행위자가 독자적인 행위를 포기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적 행위를 취해야 한다. A. Stein, *Why Nations Cooperate: Circumstance and Cho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p. 39, 각주 29.

2) Ibid., p. 138.

태가 불안정하다. 이에 대한 보장책으로 허용가능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이러한 내용을 조약의 형태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합의사항의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중요시되므로 적절한 검증제도를 수립·이행해야 한다.³⁾

남북한은 오랜 불신과 대결속에서 체제와 정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을 계속해왔다. 양측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택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느낀다. 즉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 보다는 상대방의 태도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행위를 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호할 것이다. 반면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정책을 결정한 상태에서 남북한은 상대방이 대결적 입장을 완화하여 협력적 조치를 취해주기를 선호한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아무런 저항없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로 간주한다. 이는 자신의 체제와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는 비협력적 자세를 우위전

3) Ibid., pp. 39~41. 제니스 스타인(Janice Stein)은 신뢰구축방안(Confidence Building Measure: CBM)을 이용한 공동이익의 딜레마 해소 문제를 제기하였다. 스타인은 처음에는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인 공동회피의 딜레마(dilemma of common aversion)를 해결하기 위한 CBM을 이행하고 후에 준수와 검증문제가 중요시되는 공동이익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CBM을 실시하는 순차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J. Stein, "Confidence building and dilemmas of cooperation: the Egyptian-Israeli experiment," in G. Ben-Dor and D. Dewitt, ed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the Middle East*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p. 213~214.

략으로 선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력적 자세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구도대로 움직여주는 것을 가장 원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여있는 두 당사자들의 독자적인 행동은 종종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자관계의 악화, 군비경쟁과 무력충돌, 외교적 소모전, 경제·사회적 발전 저해 등을 부정적 결과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남북한이 독자적인 행위에 의한 결과보다 만족스러운 공동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사안별로 협력해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군사적 대결상태속에서도 남북한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으며 쌍방의 이해가 일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이행하였다. 물론 합의사항의 이행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방이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중단함으로써 협력적 관계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한의 관계가 PD 게임상황으로 적절히 묘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남북한은 협력과 비협력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갈등구조속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공동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제한된 사안에 대해 배타적 자세를 버리고 상호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왔다. 협력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남북관계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상호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이는 다른 분야 더 나아가 전반적인 관계에 큰 영향을 신속하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2년 10월 한·미가 19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결정하자 북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1993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가 공식 발표되자 북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까지 거부하였다.

남북한의 관계는 또한 지난 반세기간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미래의 지속적인 관계가 확실히 보장되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호긴장을 완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한 장래의 이익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으며 남북한 당국에 의해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는 「미래의 그늘」도 충분히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공동이익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은 네 가지 협력전략을 적절히 구사하여 협력을 도출해 낼 수 있다.⁴⁾ TFT 전략과 ECR 전략은 PD 상황하에서 「미래의 그늘」이 확보된

4) 조지(Alexander George)는 TFT 전략과 GRIT 전략이 상호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A.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pp. 705~706. 나머지 두 전략도 상대방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호이익이 존재하는 게임상황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상호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간주된다. 웨버는 상대방의 선호도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Meta strategy로 정의하였다. Meta strategy는 특정 현안에 대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이익에 대한 기본개념을 변화시켜 게임결과에 대한 선호도를 바꾸는 전략이다. Meta strategy의 사례로는 미국이 ABM 개발을 선호하는 소련의 입장을 바꿀 목적으로 소련 전략가들의 사고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교육과정"(learning process)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은 ABM 개발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와 학자들간에 공식·비공식 접촉을 활성화하여 많은 의견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소련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S.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p. 72, 92.

상황에서 개발된 전략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두 전략의 의미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이 두 전략을 이용하여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다.⁵⁾ 필요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악셀로드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협력이 불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상호주의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호주의 대신 이타주의나 상대방에 대한 오해 혹은 행위자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악셀로드의 조건은 충분조건도 아니다.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황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한 행위자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치를 시작하고 다른 행위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처한 상황이 반드시 PD 게임으로 묘사될 수 없는 경우 악셀로드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이를 기초로 개발된 웨버의 ECR 전략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고 이를 인식함으로써 협력의 필요성만 제기될 수 있다면 TFT 전략과 ECR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GRIT 전략과 연계전략은 TFT 전략이나 ECR 전략과 같은 상황적인 제약요인에 구속받지 않고 개발되었다.

KEDO 체제는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PD 상황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견해가 가능하다. 물론 KEDO 체제에서는 남북한 뿐아니라 한·미와 북·미 관계도 다루

5) Ibid., p. 36.

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KEDO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양자관계중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남북관계를 제외한 기타 양자 및 다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중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남북한의 의사결정시 적절히 고려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남북한은 양자간의 PD 상황에서 국내여론과 각 이해집단 및 KEDO 체제에 관련된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하나의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자로 정의될 수 있다.

(2) 협력이 가능한 성향

행위자들이 TFT 전략과 ECR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절대이익을 추구하는 AGM 성향을 지녀야 한다. 행위자들이 상대이익을 추구하는 RGM 성향을 가진 경우 악셀로드의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없으며⁶⁾, 이를 기초로 개발된 웨버의 ECR 전략도 역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GRIT 전략과 연계전략의 경우 행위자의 성향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그러나 공동이익을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두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 역시 AGM성향을 가진 것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공할 핵전력의 균형을 통해 상호억지가 유지되었던 미·소 관

6) Ibid., p. 22.

계는 핵전력의 상대적인 이익이 자국의 안보이익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대이익이 주요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⁷⁾ 반면에 남북한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불신과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이익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남북한의 의사결정주체들이 경쟁을 유발하는 RGM 성향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협력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한 대결적 인식하에서 체제경쟁을 지속하는 한 진정한 협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북한 핵문제 발생 이후 남북대화가 중단되는 시련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화의 전망이 어둡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한간에 공존의 바탕위에서 상호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한의 공산화를 집요하게 추구한다면 북한은 강한 RGM 성향을 가진 행위자로 간주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대남 적대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와 더 밀접해질수록 대남 적화전략이 국가전략으로 구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미의 확고한 안보협력 역시 북한의 RGM 성향을 차단하는 보장장치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북한이 우려하듯이 남한이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면 남한

7) Ibid.

역시 RGM 성향의 행위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독일의 통일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급격한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당기간의 관계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질성을 극복하는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하고 있다.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단계적인 통일을 실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남북대화 단절상태가 계속되어서 남북관계가 상대방과의 이익차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결상태로 영구히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이익이 존재하는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 모두 자신의 절대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AGM 성향을 가진 행위자로 정의될 수 있다.

남북한이 처한 상황과 의사결정자로서의 남북한의 성향을 검토한 결과, 남북관계는 본 연구에서 소개한 네 가지 협력전략이 구사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어느 일방이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비협력적 조치를 취해서 단기적으로 상대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한의 전반적인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대화는 복원될 수밖에 없으며 양측은 협상의 장에서 다시 상호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남북한은 공동이익이 인식되는 경우 사안별로 적절한 협력전략을 구사하여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남북한 협력증진의 기본방향

북한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협력에 우호적인 여건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조지는 미·소가 안보협력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인식하더라도 협력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다섯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았다.⁸⁾ 이를 남북관계에 응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무정부상태의 국제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이다. 즉 상대방의 침략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보를 증대하기 위해 취한 행위자의 조치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로 인식되어 무력을 증강하도록 유도하고 이는 다시 위협을 느낀 행위자의 군비증강으로 귀결되는 안보위협과 긴장고조의 악순환(vicious circle)을 말한다. 이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인식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반응을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주의깊은 분석과 연구가 선행된 후에 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남북관계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는 이데올로기 문제이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에 대

8) A. George, "Factors influencing security cooperation," in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 655~667.

해서는 사악한 이미지를 만들므로써 협력을 어렵게 한다. 이데올로기는 또한 상대방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협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 상대방의 이미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이는 북한과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대북인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경협 문제를 이데올로기 혹은 체제경쟁적 차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이 여러분야에서 보이고 있는 이질적 차이점들이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양측은 정치·경제·사회·군사·문화적 제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 반세기 동안 발생한 이질성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의미있는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은 상호불신의 골이 깊고 빈번한 접촉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쌍방이 특정한 합의를 했을 때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남북관계가 합의사항의 위반 가능성이 상존하는 PD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상황적 여건

도 검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상대방의 위반가능성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획득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폐쇄되고 중앙집중적 사회체제인 북한보다 다원화되고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는 민주적인 한국에서 더 클 수밖에 없다.⁹⁾

다섯째, 남북한 쌍방의 국내 정치적 문제와 동맹관계도 상호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측의 정권은 모두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와 연계해서 다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의 흡수통일 기도를 우려하면서 체제생존에 최우선 관심을 두고 있는 북한이 남북문제를 국내 정치와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려는 경향을 드러낼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협력이 양측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해당 국가는 남북협력에 제동을 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¹⁰⁾ 이는 남북한 당국이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관점에서 또한 불필요한 외세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남북문제에 접근할 때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9) 전성훈, 「군비통제 검증 연구: 이론 및 역사와 사례를 중심으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34~135.

10)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이 보여 준 행위를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NSC에서 핵비확산 문제를 담당했던 리스(Mitchell Reiss)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강력한 남북한 상호사찰이 실시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중이던 남북정상회담 계획을 취소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M. Reiss,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5), p. 240.

조지는 안보분야에서 미·소간의 협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¹¹⁾ 이를 남북관계에 응용하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가능하면 당면한 문제를 여러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decompose). 즉 복잡한 현안을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커다란 업적을 만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작은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와 여건 그리고 절차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이 복잡한 문제를 나누어서 해결하려는 실용적 자세와 대화전략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¹²⁾ 그러나 문제를 분해하더라도 각 부분들의 합의와 이행을 지나치게 연계한다면 분해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남북군사분과위원회에서 견지한 「개별합의, 건별실천」 기조는¹³⁾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¹⁴⁾

11) A. George, "Factors influencing security cooperation," pp. 670~675.

12) 경수로협상에서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기획단의 박인국 국제협력부장은 공급협정 협상에서 KEDO와 북한은 쟁점을 후속의정서로 미루고 합의가능한 것만을 모아 공급협정을 체결했으며 후속의정서 협상도 같은 방식으로 타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예를 들어, 통행의정서의 경우 항공로의 추가 지정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연기됨). 박인국 부장과의 의견교환, 1996년 11월 28일.

13) 한국은 문제의 경중완급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개별합의, 건별실천」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어느 한 분야에서 전부를 합의하지 않으면 그 분야의 어느 하나도 실천할 수 없다는 「일괄합의, 동시실천」 입장을 유지하였다.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138, 각주 11.

둘째, 안보딜레마를 극복하겠다는 남북한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딜레마가 군비증강과 긴장고조를 가져온다는 점에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정찰활동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조치도 안보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이 상대방의 공중정찰활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영공개방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¹⁵⁾

셋째, 협상타결의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목표시한이 설정되었을 경우, 양측이 불필요한 장애물을 조성하지 않음으로써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991년 12월 10~13일, 서울)에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에 합의했으나 핵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핵문제가 타결되지 못하자 국제적 우려가 고조되었다.¹⁶⁾ 명시적인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14) 「스톡홀름협약」의 미국측 협상대표였던 굿비(James Goodby)도 그의 협상경험을 통해 한국의 「건설합의, 즉시실천」 회담추진 방식이 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라고 보았다. J. Goodby, "Opera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implications for security negotiation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 no. 1 (Summer 1990), pp. 117~118.

15) 남북한 영공개방에 대해서는 전성훈, A. Smithson, "南北韓 領空開放: 意義와 可能性," 「國際政治論叢」, 제32집 2호 (1992), pp. 359~372 참조.

16) 전성훈, "남북 핵협상 현황과 전망," 「統一研究論叢」, 창간호, 1992년 6월, p. 141.

남북한이 12월 31일 비핵화 공동선언을 타결한 것은 국제사회를 의식하여 핵협상도 기본합의서와 같이 연내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남북한의 체제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양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경우, 남북한은 소모전을 자제하고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남북한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상호경쟁에 의한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야 협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관계가 힘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경쟁이 초래한 손실로 인해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측은 소모전을 감당할 능력이 크기 때문에 RGM 성향을 갖고 상대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국력이 열세인 측은 상대방의 호전적 행위에 유사한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긴장이 유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열악한 환경에서 강요된 경쟁을 계속해 온 국력이 열세인 행위자는 체제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쟁도발이라는 최후의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남북한 양측 지도자의 리더십이 상호협력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지도력은 협력의 성공과 실패를 가능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남북한 양측의

지도자가 상호협력과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양측의 다양한 이익집단을 설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전략적 차원의 대책

남북한의 협력은 양측이 독자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데 공동의 이익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개별적인 행동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 남북관계를 PD 상황으로 전제하는 것은 양측간에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한이 협력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네 가지 협력전략이 모두 남북관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간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네 가지 협력전략이 갖는 문제점과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TFT 전략의 한계

제Ⅱ장에서 TFT 전략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TFT 전략이 협력전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TFT 전략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간의 골이 깊은 상호불신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남북한은 어느 일방이 취한 협력적 조치를 순수히 받아들이기 보다 상대방의 의도가 진실한 것인지를 의심하는 경향이 더 많다.

둘째, 남북한간에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비협력적 조치의 연쇄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양측간에 적대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1:1식의 대응으로 협력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넷째, 남북한, 특히 양측의 의사결정주체들은 상대방에 대한 나쁜 이미지와 편향된 인식으로 인해 상대의 의도를 불순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

다섯째, 남북한의 정책은 양측 내부의 보수적 성향을 가진 계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보수적 여론은 상대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하는 RGM 성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TFT 전략을 구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

여섯째, 양측의 국내정치적 요인들이 TFT 전략을 채택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대남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특히 선거를 즈음하여 국내 보수층을 의식한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남북한은 상대방의 행위를 이중잣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상대방의 군사훈련은 침략을 위한 준비훈련으로 묘사

되는 반면, 자신의 군비증강은 순수방어용으로 미화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상호주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적은 것을 양보하는 대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태도도 남북한 협상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즉 양측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협상을 하더라도 이익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상호불신과 적대감, 체제경쟁적 성향 및 상호이해의 부족 등으로 대표되는 남북한의 현실은 TFT 전략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사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GRIT 전략의 유용성

오랜기간에 걸쳐 불신과 긴장이 심화된 남북관계에서 GRIT 전략은 남북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93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GRIT 전략의 사용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GRIT 전략의 이론적 단계를 그대로 답습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GRIT 전략이 갖고 있는 핵심 개념과 주요 원칙들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련이 미국에 대해 적용한 GRIT 전략의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한국의 GRIT 전략이 북한내 강경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GRIT 전략 구사는 북한 강경파가 남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지라도 북한내에서 남북협력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내 온건파의 대남정책이 국내외적으로 지지를 얻도록 유도함으로써 북한내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온건파의 의견이 채택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GRIT 전략은 한국의 대북전략이 상호협력 지향적임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GRIT 전략은 미국이 추진중인 대북 연착륙정책과 일맥 상통함으로써 한·미간의 정책조율과 공조에도 공헌할 것이다.

물론 남북한의 적대관계는 어느 일방이 GRIT 전략을 구사하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이미 한국의 승리로 판가름났고 한국의 대북 우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고해 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보다 자신감을 갖고 제한된 분야에서 GRIT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¹⁷⁾

대북 GRIT 전략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의 이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한국이 취한 유화적 조치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함

17) 특히 해외의 한반도문제 혹은 안보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견이 폭넓게 개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요크대학 전략문제연구소의 드윗(David Dewitt) 소장도 같은 견해를 피력하면서 한국이 북한의 조치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중요한 일부사안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1996년 11월 7일 필자와의 의견교환.

으로써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다소의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둘째, 대북 GRIT 전략은 대통령이 적절한 기회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써 한국의 조치에 대한 정치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선전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조치를 확보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급적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북 GRIT 전략이 북한내에서 남북협력을 지지하는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설사 긍정적인 반응이 조기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GRIT 전략은 북한의 대남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하에 인내심을 가지고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GRIT 전략은 북한내 대남 강경파의 인식을 단기간내에 바꾸지는 못할 지라도 대내외적 압력을 강화하여 이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다. 연계전략의 유용성과 한계

남북한이 지금까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유화조치를 취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때 대부분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측의 남북대화 전략이 사실상 연계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계전략은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네 가지의 협력전략중에서 양측의 당국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전략이다. 남북한이 연계전략

을 빈번히 구사하는 이유는 연계전략이 쌍방간의 신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구사에 따른 위협도가 낮으므로써 가장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협력전략이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만 보더라도 다양한 연계전략이 남북간에 의해 구사되었다. 북한은 1992년 말 한·미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을 연계하여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제외한 기본합의서상의 모든 의무행을 거부하였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쌀지원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남북간 직접대화를 성사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유도하려 하였다. 또한 북·미 기본합의문은 고도의 연계전략의 산물이며 남북간은 KEDO를 통한 경수로지원과 북한의 핵활동 동결을 밀접히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이 구사한 연계전략은 협력을 유도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간에 협력이 도출될 수 있는 관계의 미성숙,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인식 부재, 연계전략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의 미비, 연계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기 선택의 문제점, 연계전략에 사용되는 대상 선택의 문제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리획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무리한 연계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연계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계전략의 효과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않된다. 둘째, 연계전략이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의 차선택으로 혹은 남북대화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않된다. 셋째, 연계전략의 활용시 북한의 반응과 역연계전략의 사용가능성 등이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연계전략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비연계, 연계, 역연계 전략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융통성있게 구사되어야 한다. 여섯째, 연계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계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행위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보상약속이나 위협이 신뢰성을 지녀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은 고도의 연계전략의 산물이다. 협상의 주역인 북한과 미국의 의무사항이 순차적으로 밀접히 연계됨으로써 어느 일방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합의문 이행 자체가 중단되도록 짜여져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KEDO 참여국들이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합의문의 서명자가 아닌 한국이 KEDO 체제내에서 연계전략을 구사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자간 협의체에 구성원들이 연계전략을 구사한 사례는 EEC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 있다. EEC내의 국가들은 포크랜드 전쟁에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영국을 상대로 연계전략을 구사하여 EEC내의 현안문제에 대한 영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었다.¹⁸⁾ 이와 유사하게 한국도

KEDO라는 조직내에서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을 상대로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EEC 회원국들은 EEC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EC 외부의 문제를 연계하였다. 한국 역시 KEDO 체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DO 체제와 연관이 없는 문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서 KEDO 체제가 EEC와 다른 점은 한국이 KEDO 체제의 핵심사안인 경수로사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수로사업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는 KEDO 체제내에서 한국의 입지와 협상력을 높혀 주는 소중한 자원이다. KEDO 체제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이러한 이점은 한국으로 하여금 KEDO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DO 내부의 문제를 이용하는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북 경수로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가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해외 수출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획득하는 연계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KEDO 체제하에서 체제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사안과 연계함과 동시에 체제외부의 문제를 내부의 사안과 연계하는 양면적 연계전략(two-way strategy to cross-issue linkage)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KEDO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라는 제한된 목표를 갖는 한시적 조직이며 EEC 만큼 구속력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18) L. Martin,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sanctions during the Falkland islands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92), pp. 143~177.

인식해야 한다. KEDO 체제의 이러한 문제점은 연계전략 구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본합의문의 이행과 관련한 연계는 가능할지 모르나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을(예를 들어 한국의 방위비분담 조정) 연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라. ECR 전략의 유용성

ECR 전략도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협력 전략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ECR 전략이 갖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은 한국이 ECR 전략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ECR 전략은 상대방의 비협력적 행위에 대비한 선택가능한 대안과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함으로써 행위자의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ECR 전략의 이러한 대비태세는 한국의 대북전략이 무조건적인 유화전략이거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킴과 동시에 북한이 비협력적 조치를 취할 경우의 대응태세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ECR 전략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너무 위협적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한다. ECR 전략의 이러한 조심성은 정치·경제적 난국속에서 체제유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국의 흡수통일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의 의도가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보다 긍정적으로 호응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ECR 전략은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양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한을 설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특정분야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칙적인 요구를 할 뿐이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가중되는 압박을 줄이고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넷째, 북한의 비협력적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정도의 대응 이상의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상대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불필요한 경쟁과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ECR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세이프가드 계획이 보여준 바와 같이, 북한의 태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국의 대응범위와 강도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남북간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즉 북한의 행위와 한국의 대응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의 비협력적 조치에 대응하되 남북한 협력의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할 대응 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북 및 대주변국 전략수립체제

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ECR 전략의 장점은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가 국내의 대북한 강경입장도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경입장이 반영되는 수위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북한의 의심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다면 협력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ECR 전략은 일관성있게 구사되어야 한다. 한국이 북한에게 모순된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의 의도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의혹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한국의 대북정책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⁹⁾

결론적으로 한국은 그 동안 빈번히 구사해 온 연계전략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비연계, 연계 및 탈연계전략을 상황에 따라 조심성있게 구사해야 한다. 특히 경수로사업을 남북간의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는 데는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²⁰⁾ 경수로 건설은 비록 원자력 분야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남북간의 접촉기회를 증대하는

19) 예를 들어, 오공단 박사는 북한 관리들과의 면담에서 북한 관리들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의도를 불신하고 대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96년 10월 29일 필자와의 의견교환.

20) 이와 달리, 북한내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대북 경제 협력을 군사분야에서 북한의 양보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J. Mo, "Security and economic linkage in inter-Korea relationship,"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Continuity or Change*, Hoover Institution, Stanford, CA, February 27~28, 1996, p. 18.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순수하게 경제·과학·기술적 협력차원에서 경수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GRIT 전략과 ECR 전략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중·장기적 대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가지 전략의 사용은 KEDO 체제의 이행이라는 협소한 분야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남북관계, 북·미, 북·일 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당면 현안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혹은 이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목적으로 두 전략이 구사될 수도 있다.

그러나 GRIT 전략과 ECR 전략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GRIT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북한에 대해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 보수층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이론은 설혹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상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RGM 성향을 갖고 있을 지라도 한국이 대북한 지원정책을 펼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익을 제공하는 남한보다는 이익의 수혜자인 북한이 남북관계에 더 크게 의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대남 적대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북

21) 이는 협상이론의 핵심명제중의 하나이다. Ibid., p. 7.

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북한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국내의 반대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3. 사안별 세부대책

경수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세부대책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세부대책에서는 문제의 성격상 일정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GRIT 전략이나 ECR 전략과 달리 연계전략의 개념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세부대책에서 연계의 대상은 남북한간의 현안보다는 한·미 및 한·일간의 관련 사안들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가. 중유제공 문제

한국은 미국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중유제공 문제와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수로사업에 대해 탈연계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중유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유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전용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중유비용 지출불가 입장과 경수로건설비용을 제외한 경수로사업의 기타 소요비용 부담불가 입장을 연계·발전시켜서 북

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대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나. 기술자문사(TSC)의 위상과 역할

KEDO와 듀크사는 1996년 10월 29일 TSC협정을 체결하면서 TSC의 기본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주계약 협상 등 KEDO의 계약업무를 지원한다. ②주계약자가 수행한 기본설계와 설계기준에 대한 공급협정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③주계약자의 공정진행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다. 또한 TSC협정은 TSC가 주계약자에 대해 지시할 수 없으며, TSC의 연례작업계획은 집행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하고, 필요시 KEDO는 TSC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한국배제 전략이 계속되는 경우 TSC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경수로사업의 기본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한국은 TSC의 역할을 주계약자를 위한 대북 연락창구와 KEDO에 대한 기술자문에 국한시킨다는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것이다.

다. 비용분담 및 사업배분 문제

한국은 우선 경수로 건설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을 연계하지 않

음으로써 한국의 비용부담은 전자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경수로 건설비용은 양해사항인 70% + α 선에서 합의되어도 무방하지만 국내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납득할만 한 수준의 사업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배분과 관련하여 한국은 한국형경수로 채택 원칙과 국내여론을 강조하면서 95%선 확보를 최초 협상안으로 제시하면서 최소한 비용지불수준에 상응하는 70% + α 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경수로비용 재원마련 문제

한국은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경수로 건설비용 지출의 정당한 명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존 입장은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²²⁾ 하지만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입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미·일과의 경수로비용 분담협상에서 정부의 협상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민족발전공동계획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비용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즉

22) 한국은 경수로사업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남북경협 사업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국일보」, 1996년 2월 21일.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례규정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東亞日報」, 1996년 6월 23일. 한편 통일원은 1996년 7월 19일 한전이 제출한 경수로사업에 대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신청을 승인하였다.

경수로비용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비용의 성격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미·일에 대해 비용분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614 권한”(614 authority)을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아울러 한국은 경수로비용을 한·미 안보 및 한·일 경제관계와 연계하여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율을 축소하고 한국의 MTCR 가입을 지원하도록,²⁴⁾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 역조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북한의 원자로설계 변경 요구

한국은 북한의 원자로 설계변경 요구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미·일과의 공동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한국형경수로에 대한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일과의 비용분담 협상시 미·일 양국정부와 TSC가 한

23) 클린턴 대통령은 1961년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의 614(a)(1)항에 근거하여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KEDO에 4백만달러를 제공한 바 있다. *White House Press Release: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5, 1995.*

24) 한국은 1979년 미국에 대해 미사일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500kg/180km이상의 미사일을 개발·보유·획득하지 않겠다고 비공식으로 약속함으로써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은 현재 사정거리 300km까지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형경수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이를 문서형태로 보장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바.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 및 NPT 복귀 지연

미국이 기본합의문에서 북한의 제한적 사찰수용 입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IAEA 사찰문제는 직접당사자인 IAEA도 완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합의문을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틀로 인정한 한국도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특별사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북·미가 특별사찰을 실시하지 않은 채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사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은 KEDO 체제에서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북·미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앞으로 특별사찰 문제에 대해 실시원칙은 고수하되 이행상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과거 핵의혹이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핵동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별사찰 문제를 한국이 취할 대북조치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에 한국은 북

한의 핵동결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의할 수 있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CIS 국가들의 핵과학자와 핵기술 및 핵물질 유출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등장한 점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사용후핵연료의 사찰 및 이전

한국은 사용후핵연료 사찰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영향력 축소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플루토늄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IAEA의 입장을 적극 지지·지원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과거 핵의혹 해소라는 대북 핵정책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조치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과시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 비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 셋째,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한국의 대북, 대미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 플루토늄 측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IAEA와 남북한간의 합의하에 중립성이 보장되는 원자력전문가나 국제기구가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를 경수로사업의 상당 부분 완료시 그리고 주요 부품

인도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소유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한 규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은 남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모두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민족의 공동이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립하도록 한다. 첫째, 사용후핵연료의 소유권이 북한측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재활용할 경우 북한이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수립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의 제3국 이전을 요구하는 국가가 이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셋째, 이전대상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이전이 용이해야 하므로 중국과 일본 등이 적합한 대상국들이다. 넷째, 이전 후의 최종 형태는 재처리를 우려하는 미국을 고려하여 일단 영구처분 입장을 취하되 원자력 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전대상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 핵시설 해체 참여 및 해체비용 마련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차원에서 북한 원자력시설의 해체과정에 참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체비용과 관련

하여 경수로건설 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부대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자. 사업완료시한 지연 및 손해배상 문제

북한은 공기지연 사태를 최대한 활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1997년개최될 예정인 인도일정에 관한 의정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공급협정 체결이 지연된 선례를 들면서 기본합의문상의 목표시한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북한이 이의를 제기해서는 않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업완료 시한의 지연은 미·일 등 다른 KEDO 참여국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들도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행동으로 경수로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연계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목표시한의 지연은 중유제공 비용의 증대를 의미하므로 중유제공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것이다.

차. 송배전망 건설 문제

북한의 송배전망 구축은 남북한의 에너지협력을 촉진하고 전력체계를 단일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취할 대책제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송배전망 구축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25) 송배전망 건설 문제는 경수로 1호기의 완공에 즈음하여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 시점에서는 북한의 과거 핵의혹이 해소되고 남북관계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송배전망 건설에 따른 재원을 국내에서 마련하는 데 별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6년 10월 30일, 경수로기획단 관계자의 인터뷰.

제 V 장 결 론

대북 경수로사업은 1995년 12월 15일 공급협정이 체결된 이후 원만하게 진행되어 왔다. KEDO와 한전을 중심으로 6차례의 부지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착공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도 모두 합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라는 정치·군사적 사안이 돌출하여 중유제공을 제외한 기본합의문상의 모든 조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경수로사업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과 사업의 수혜자인 북한간에 관계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지난 50년간의 분단역사는 남북한이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제한된 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수로 사업은 KED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주변국들의 지지와 참여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양측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은 상호 이익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계속 협력을 모색할 것이며 경수로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기본취지는 국가간의 협력문제를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협력증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이 협력을 증진하는 문제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우선

“협력”에 대한 개념정의 조차 모호한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여, 1980년대 들어 국제정치학에서 국가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 발전하고 있는 협력이론을 소개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전략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둘째, KEDO 체제를 레짐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미 기본합의문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경수로사업의 이행현황과 향후일정 및 사업추진상의 예상문제점도 검토하였다. 셋째, 이상의 이론적 및 현실적 검토를 바탕으로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간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본요건, 전략적 차원의 대책 및 사안별 세부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본합의문은 경수로건설의 목표시한을 2003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경수로사업이 목표시한까지 완료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미국방장관 페리가 1995년 1월 의회청문회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데 향후 2008까지 약 14년을 예상하고 있었다.¹⁾ 이는 우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북한 핵문제와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경수로 건설은 통일을 위한 남북한 관계진전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국내외적 명분과 현실성을 갖추고, 우리의 입지와 역할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자주적 정책을 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Honorable William Perr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Matters Dealing with the Korean Peninsula*, January 26, 1995. 이는 경수로사업이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 지연되지 않고 원활이 진행되었을 경우의 예상소요기간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한국은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또한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이중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이 경수로사업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부담없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불신의 골이 깊은 남북한간에 향후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도 경수로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에 확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원자력 기술자들과의 접촉 및 기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원자력 기술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과거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어느 정도 북한 핵의 불모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과의 정보교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기본합의문의 타결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물질과 기술을 밀수입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실 밀수입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큰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동구권으로부터 핵물질, 핵기술, 핵무기전문가들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지금까지 달성한 북한 핵의 투명성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은 핵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연계전략의 구사를 포함한 대주변국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자력 분야에서의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색채가 비교적 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먼저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가능한 신뢰구축방안으로는 경수로사업에 가급적 많은 북한 인력의 참여 보장, 남북한 원자력시설의 상호 방문, 남한의 경수로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기 위한 경수로기술협력센터의 설립, 북한의 원자력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원자력 개발과 관련한 각종 학술회의 공동개최, 북한의 우라늄 광산 등 원자력 관련 천연자원의 공동개발,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북한의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 지원,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회의에서의 입장조율 및 공동입장 개진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및 실제적 관점에서 남북한이 상호협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정으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와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 김태현·유석진·정진영 (편). 「외교와 정치: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논리와 전략」.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5.
-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전성훈. 「1995년 NPT 연장회의와 한국의 대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_____. 「군비통제 검증 연구: 이론 및 역사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Axelro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 George, Alexander,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Haas, Peter. *Saving the Mediterrane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 Keohane, Robert.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Krasner, Stephen,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Lindblom, Charles.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1965.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Osgood, Charles.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 Oye, Kenneth,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 Reiss, Mitchell.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5.
- Russett, Bruce. *The Prisoners of Insecurity*.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1983.
- Stein, Authur. *Why Nations Cooperate: Circumstance and Cho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 Taylor, Michael.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Weber, Steve.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2. 논문

전성훈. “남북 핵협상 현황과 전망.” 『統一研究論叢』, 창간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년.

전성훈, Amy Smithson. “南北韓 領空開放: 意義와 可能性.” 『國際政治論叢』, 제32집 2호, 1992.

Axelrod, Robert and Robert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in Oye, Kenneth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Blechman, Barry. “Efforts to reduce the risk of accidental or inadvertent war.” in George, Alexander,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Cheon, Seongwhun and Niall Fraser. “A multi-level game approach to labor-management negotiations.” *Information and Decision Technologies*, vol. 16, no. 3, 1990.

Daadler, Ivo. “The Limited Test Ban Treaty.” in Carnesale, Albert and Richard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Dean, Jonathan. "Berlin in a divided Germany: an evolving international regime." in George, Alexander,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Denzau, Arthur, William Riker and Kenneth Shepsle. "Farquharson and Fenno: sophisticated voting and home styl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85.

Finlayson, Jock and Mark Zacher. "The GATT and the regulation of trade barriers: regime dynamics and functions."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George, Alexander. "Factors influencing security cooperation." in George, Alexander,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_____. "Incentives for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in George, Alexander,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_____.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in George, Alexander,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Glaser, Charles. "Realists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1994/95.

Goodby, James. "Opera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implications for security negotiation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 no. 1, Summer 1990.

_____. "The Stockholm Conference: negotiating a cooperative security." in George, Alexander,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Haggard, Stephan and Beth Simmon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7.

Jervis, Robert. "Security regimes." in Kraser, Stephen,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_____.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January 1978.

Keohane, Robert.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1, Winter 1986.

Kim, Chae-Han and Taehyun Kim. "Diffuse reciprocity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note on a research program." a paper presented at *the 36th Annual Convention of ISA*,

Chicago, February 21~25, 1995.

Kim, Samuel. "North Korea in 1994: brinkmanship, breakdown, and breakthrough." *Asian Survey*, vol. 35, no. 1, January 1995.

Krasner, Stephen.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Krasner, Stephen.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Larson, Deborah. "The psychology of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gotiation Journal*, July 1988.

_____.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nter 1987.

Lipson, Charl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October 1984.

Lynn-Jones, Sean. "The incidents at Sea Agreement." in George, Alexander,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Martin, Lisa.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sanctions during the Falkland islands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92.

Milner, Helen.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 *World Politics*, April 1992.

Mo, Jongryn. "Security and economic linkage in inter-Korea relationship."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Continuity or Change,
Hoover Institution, Stanford, CA, 1996.

Morrow, James. "Modeling the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istribution versus inform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94.

Nye, Joseph.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in a nonproliferation regime." in George, Alexander,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_____.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7.

_____. "The superpower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n Carnesale, Albert and Richard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Osgood, Charles. "Suggestions for winning the real war with communis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December 1959.

Putnam, Robert.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Smith, Roger. "Explai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nomalies fo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ring 1987.

Smithson, Amy. "North Korea" in Bernauer, Thomas, Jozef Goldblat and Dieter Ruloff, eds. *Positive Incentives in Arms Control*, Zürich: ETH, 1996.

Snidal, Duncan. "Relative gains 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September 1991.

Stein, Arthur. "The politics of linkage." *World Politics*, 1980.

Stein, Janice. "Confidence building and dilemmas of cooperation: the Egyptian-Israeli experiment." in G. Ben-Dor and David Dewitt, ed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the Middle East*, Boulder: Westview Press, 1994.

Tsebelis, George. "Nested games: the cohesion of French coali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8, 1988.

Wagner, Harrison. "The theory of games and the proble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June 1983.

Weber Steve and Sidney Drell. "Attempts to regulate military activities in space." in George, Alexander,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3. 기 타

<신문, 잡지 및 방송>

「東亞日報」.

「世界日報」.

「朝鮮日報」.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USIA Wireless File.

<기타 문건>

A Coming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od Crisis, Economic Decline,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6.

Curtis, Charles. *Testimony for Charles B. Curtis Under Secretary of*

Energy before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U.S. Senate. January 19, 1995.

Honorable Perry, William.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Matters Dealing with the Korean Peninsula.* January 26, 1995.

White House Press Release: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5, 1995.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 96-10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 外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中心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일본총선 결과분석
- 96-09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研究報告書 96-1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성진문예사 전화 : 273-5577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